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연구

2002. 11

연구자 : 김명용(부연구위원)

한 국 법 제 연 구 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환경감사제도의 도입필요성	11
제 1 절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11
1.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경쟁상의 이익	11
2. 이미지획득과 위험사전배려를 통한 기업경쟁상의 이익	11
제 2 절 환경감사제도의 환경 정책적 장점	13
1. 환경법의 유연성증가	13
2. 집행결여의 개선	13
3. 일반공공에 대한 정보제공	14
4. 환경감사제도에 의한 규제완화	14
제 3 절 우리 나라의 환경경영감사의 현황과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	15
1. 의 의	15
2. 국내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의 운영현황	16
3.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감사 관련법제의 분석	17
4. 결 어	37
제 3 장 환경감사법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41
제 1 절 OECD의 환경전략과 환경경영	41
1. 의 의	41
2. 경제와 환경의 통합	42
3. 무역·환경전략	44
4. ISO 14000시리즈	45
5. ISO 14000시리즈와 앞으로의 전망	47

제 2 절 유럽연합의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법	47
1. 의 의	47
2. 유럽환경감사법의 환경 정책적 목표설정	48
3. 적용범위	50
4.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기업 내부적 의무	51
5. 환경경영규격과 관련한 환경감사법에 기초한 기업 내부적 의무 ..	64
6. 환경감사제도에 대한 기업 외부적 통제	67
7. 인증절차	68
8. 환경감사제도의 공개	69
9. 중소기업에서의 환경감사법의 적용과 참가의 촉진	70
제 3 절 독 일	72
1. 환경감사법의 목표와 적용범위	72
2. 환경감사제도의 본질적 내용	75
제 4 절 미 국	88
1. 의 의	88
2. 환경감사의 도입배경	89
3. 전문가의 활용 및 선출방법	90
4. 환경감사의 과정	91
5. 환경경영원칙에 관한 법	93
6. 환경감사특권법	97
제 5 절 비교법적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100
1. E U	101
2. 독 일	101
3. 미 국	102
4. 시사점	104
제 4 장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107

제 1 절 입법방식 및 제정목적	107
1. 입법방식	107
2. 입법목적	108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9
제 2 절 적용범위	110
제 3 절 환경경영체제 및 환경감사를 위한 기업 내부적 수단	112
1. 환경정책의 수립과 확립	112
2. 최초의 환경감사의 실시	113
3.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의 설정	114
4.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확립	115
5.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115
6. 감사보고서에 의한 환경공표	116
제 4 절 환경감정사에 의한 기업 외부적 환경감사와 인증절차	118
1. 개 설	118
2. 환경감정사의 허가	118
3. 환경감정사의 임무	120
4.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	122
5. 환경감정사위원회	124
6. 소재지등록절차	125
7. 참가공표	126
제 5 절 환경감사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	126
1. 환경감사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126
2. 기업비밀보장	129
제 5 장 결론 및 요약	131
참고문헌	133

제 1 장 서 론

과거에는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이 상호 연계되지 않은 채 분리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경보호문제와 경제발전이 상호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과거에는 환경보호가 국가의 임무로 파악되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환경보호는 개인과 기업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나 제재를 통하여 환경보호임무를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는 종래의 질서법상의 수단이 아니라 간접적인 수단에 의하여 개인과 기업을 환경보호에로 유도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¹⁾ 이러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환경감사제도이다.

환경감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업활동이 환경방침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 또는 기업활동과 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 등과 같은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라고 정의하기도 한다.²⁾ 또한 미국의 연방환경청(EPA)은 1986년 7월 『환경감사지침(Guide to Environmental Auditing)』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환경감사란 “환경법상의 요건의 충족문제와 관련한 시설운영 및 법집행에 관한 피규제 당사자에 의한 체계적·실증적·정기적·객관적인 심사”라고 정의하고 있다.³⁾ 그리고 효과적인 환경감사의 요소로는 객관적인 숙련된 감사요원, 질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검사시스템, 문서화된 객체 및 사후검토계획, 관련법의 준수 및 비준수와 관련한 판단, 경영진에게 제

1) 유지태,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호제도,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心泉桂禧悅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95, 880면.

2) Environmental Audi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http://euler.ntu.ac.uk/pr/>).

3) Environmental Auditing Policy Statement, 51 *Fed. Reg.* 25,004, 25,006 (1986); Lynn Holdsworth, Florida's Environmental Self-Audit Legislation: An incentive for Environmentally-Conscientious Business or An Opportunity for the Corporate Polluter to Suppress the Truth?, 27 *Stetson L. Rev.* 210, 214 (Summer 1997).

공된 감사결과의 문서화,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사항의 판단 및 확인된 위반사항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영진으로부터의 위임 등을 들고 있다.⁴⁾

이와 같이 환경감사는 기업 환경성과의 평가, 환경관련법규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주로 하는 회계감사와는 다른 것으로서 기업의 활동이 환경방침 또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환경감사제도는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전되었다. 즉 1971년부터 미국의 증권감독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으로부터 발생하고, 기업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주식회사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⁶⁾ 동제도는 미국의 환경법에 도입되게 되었고, 동법률의 기업 내부적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환경감사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⁷⁾

환경감사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에 근거하여 1989년 세계상공회의소(ICC)는⁸⁾ 그의 “환경감사”라는 취지서에 기업 내에서의 환경감사의 실시를 위한 범세계적, 단일적인 형성지침을 공식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환경감사의 개념이 최초로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되었다. 그에 의하면 환경감사는 환경보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적, 정기적, 객관적 그리고 문서화된 평가에 기여하는 경영수단이다.⁹⁾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영국은 “환경경영 표준규격에 관한 정책위원회”¹⁰⁾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4) Environmental Auditing Policy Statement, 51 Fed. Reg. 25,004, 25,009 (1986)

5) 구자건, 환경감사의 원리와 활용 방안, 환경영향평가(제7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학회, 1998, 126면.

6) Vgl. T. Bartsch, Erfahrungen mit Umwelt-Öko-Audits in den USA, ZUR 1995, S. 14.

7) Vgl. J. Scherer, Umwelt-Audits : Instrument zur Durchsetzung des Umweltrechts im europäischen Binnenmarkt?, NVwZ 1993, S. 11 und 12.

8)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Environmental Auditing - ICC Position paper on Environmental Audits, Publication Nr. 468, Paris 1989.

9) Vgl. W. Schulz, Aktuelles zum Umweltrecht, UBA 1994, S. 4.

10) 영문상의 명칭은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Policy Committee 이다.

환경경영제도의 도입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1992년 3월 16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영국 표준규격 7750”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자체적인 환경정책을 규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환경보호의 목적을 준수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었다.¹¹⁾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감사에 대하여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토대로 하여 법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의 확립과 환경경영감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무역기구와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도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환경감사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관련하여 현행 우리 나라의 환경경영 및 환경감사제도에 유사한 법령을 분석하여 그 도입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선진외국의 환경감사제도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과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법제상 나타난 환경감사제도의 목표, 내용 및 그 절차 등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Vgl. Marten/Schmid, Die EU-Öko-Audit-Verordnung und der British Standard (BS 7750) - Eine vergleichende Analyse, RIW 1995, S. 755.

제 1 장 서론

제 2 장 환경감사제도의 도입필요성

제 1 절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1.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경쟁상의 이익

환경감사제도는 일정한 조직과 경영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단기적으로 많은 추가비용을 가져오게 한다. 환경감사제도에의 성공적인 참가를 위해 기업은 그에 필요한 기업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즉 기업은 기존의 자기직원을 그에 배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생산제한과 환경감정사, 직원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운영 가능한 최적기술의 투입도 기업에 비용상의 큰 부담이 된다.

이와는 달리 환경감사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경영과정의 합리화와 자원소비의 절약을 꾀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기업은 환경감사제도를 통하여 경영과정을 시스템적으로 효율화시킴과 동시에 비용의 절감¹²⁾을 꾀할 수 있는 경영수단과 정보수단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2. 이미지획득과 위험사전배려를 통한 기업경쟁상의 이익

기업들은 자기들의 납품업체에게 품질보증에 대한 증명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이와 유사한 발전은 환경감사제도에서도 기대되어질 수 있다. 즉 장래에 공적인 위탁사업의 실시 때 환경감사 인증서를 제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탁해야 할 것이다.¹³⁾

12) Paula C. Murray, The Environmental Self-Audit Privilege: Growing Movement in the States Nixed by EPA, 24 Real Est. L.J. 169(1995), p. 169; 정영태, 환경경영시스템 이렇게 구축하자, KSA한국표준협회, 2000, 76면 이하.

13) G. Lübbe-Wolff, Die EG-Verordnung zum Umwelt-Audit, DVBl.

책임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과실과 위법에 무관한 위험책임을 포함하는 환경법적인 특별규정들이 많다.¹⁴⁾ 이는 시설가동자가 환경영향의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다시 말하면 시설운영자는 환경영향이 자기의 시설가동을 통하여 유발되지 않았음을 진술할 의무를 지닌다.¹⁵⁾

이러한 책임법적 배경에 앞서서 기업은 환경과 관련된 사건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어느 범위까지 법규정들이 준수되었고 어떤 지침과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해명하여야 한다. 이로써 기업은 손해배상요구와 형법상의 결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시설운영자는 조직상의 의무와 경영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고 시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감사제도는 포괄적인 조직상의 의무로서 문서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책임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증명서를 지닌 기업은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히 우대를 받을 수 있다.¹⁶⁾ 환경인증서를 지닌 기업은 비교적 적은 보험납입금을 지불하게 된다. 왜냐 하면 환경감사를 통하여 위험정황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¹⁷⁾ 책임에 대한 위험의 감소는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부문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을 높인다.

1994, S. 373. 이에 대한 회의적 견해로는 Sellner/Schnutenhaus, Umweltmanagement und Umweltbetriebsprüfung("Umwelt-Audit") - ein wirksames, nicht ordnungstechtliches System des betrieblichen Umweltschutzes?, NVwZ 1993, S. 932.

14) 예를 들면 독일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 UmweltHG), 독일 수자원관리법 제22조(Wasserhaushaltsgesetz - WHG), 독일 원자력법(Atomgesetz - AtG) 제25조, 독일 유전공학법(Gentechniksgesetz - GenTG) 제32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15) Balzereit/Kassebohm/Kettler, Umwelthaftung und Versicherungsschutz, BB 1996, S. 212.

16) 정영태, 전제서, 37면; Vgl. Lauff, Das Umwelt-Audit in der betrieblichen Praxis, Köln 1993, S. 14.

17) Lauff, a.a.O., S. 14.

제 2 절 환경감사제도의 환경 정책적 장점

1. 환경법의 유연성증가

환경감사제도는 전통적인 환경보호수단에 비하여 상당히 유연성을 지닌다. 환경감사법의 의미에 있어서 환경조직시스템과 경영시스템의 설치를 통하여 기업은 자기 소재지의 내부적 특성을 더 쉽게 파악하고 또 그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여러 측면들은 외부로부터 강제되기보다는 경영진과 직원들의 참가 하에 기업관리의 과정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감사법은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용 가능한 최적기술”의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동적인 요소를 통하여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2. 집행결여의 개선

종래의 질서행정법상의 수단에 의한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종종 비판되어왔다. 따라서 환경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집행결여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감사제도는 환경법상의 집행결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¹⁸⁾ 즉 자발적으로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를 결정한 기업은 한편으로는 상승된 동기를 가지고 환경보호에 필요한 조건들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법규의 준수에 대한 감독이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적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독립된 환경감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비용절감을 위하여 환경행정관청의 조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집행결여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감사제도는 국가의 감독사무를 덜어주는 기능을 하고 그와 동시에 장래의 환경행정상의 집행결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¹⁹⁾

18) Vgl. D. Sellner/J. Schnutenhaus, NVwZ 1993, S. 929.

19) Vgl. G. Lübke-Wolff, EG-Verordnung zum Umwelt-Audit, DVBl.

3. 일반공공에 대한 정보제공

최근에 국민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제고됨으로써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기업은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기 기업의 환경정보를 일반공공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환경보호의 영역에 있어서 대기,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절약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음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일반공공, 즉 대중매체와의 공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환경감사법은 일반공공을 위하여 기업의 환경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는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기업소재지의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감사제도가 환경정보법을 측면에서 보조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4. 환경감사제도에 의한 규제완화

비질서법적 수단으로서의 환경감사수단은 질서법의 영역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관계된다.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에 의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자체책임을 떠맡은 기업은 그 대가로 질서법적인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²⁰⁾ 기업들은 질서법의 영역에 있어서 규제완화조치를 통한 비질서법적인 환경감사에도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하여 인증을 받게 되면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든지,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보고·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²¹⁾를 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규제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1994, S. 363.

20) G. Lübke-Wolff, Das Umweltauditgesetz, NuR 1996, S. 225; dies, Öko-Audit und Deregulierung -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R 1996, S. 174 mit Fn. 15.

21) 예를 들어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2제3항에서 각각 허가를 신고로 대신함과 보고·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3 절 우리 나라의 환경경영감사의 현황과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

1. 의 의

우리 나라에서는 1993년 공업진흥청주관 하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국제환경경영 표준화 대책반”을 설치하고 산하에 5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국제표준화에 대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실무작업반은 ISO환경표준규격의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며, 국내 환경규격의 제정을 준비하였다. 즉 1998년 까지 완료될 ISO 환경경영규격을 감안하여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하여 환경경영규격을 채택하여야 하며, 인증심사 및 심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국내환경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경마크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로서 1991년 3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자문회의, 공청회, 외국 현지출장 등을 거쳐 1992년 4월 환경부(당시 환경처)의 고시로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하고, 환경마크 대상상품 및 부여기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1995년부터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 환경경영체제를 도입·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면허면제, 일정기간 지도단속의 면제, 자가측정의무의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우선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의 결실로서 1995년 12월 29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

기단계 등을 포함한 전과정(life cycle)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정량화한 환경성적표지를 제3자인 인증기관(환경관리공단)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녹색구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제품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1조).

이 두 법률은 기업을 환경경영시스템으로 유도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결국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파악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에 의한 인증제도와 유사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현황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아울러 이 두 법률과 그 밖의 관련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국내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의 운영현황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제도와 유사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4월 “환경친화적기업경영체제운영규정및동제도운영지침”이 제정됨으로써 그 실시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대기환경보전법령,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안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1995년 6월 처음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2002년 8월 현재 131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다.²²⁾ 이 제도는 기업의 환경전반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되지만,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 등이 풍부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에 호텔, 병원, 백화점 등 서비스업종이 환경친화기업대상에 포함되고 그 평가기준도 별도로 마

22) 환경부, 2002 환경백서, 2002. 11, 109면.

련되었다. 또한 2001년 5월에는 전국 환경친화기업들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Network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운영규정”이 개정되어 환경친화기업지정심사 주관기관을 환경부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고 심사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어 지정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와 현장감이 제고되게 되었다.²³⁾ 아울러 지정신청 대상이 국내에서 해외 소재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환경경영체제인증기업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소화, 지정신청 자격 및 지정취소요건의 완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조정 등이 개정되었다.

3.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감사 관련법제의 분석

(1) 국가표준기본법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술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1항). 이는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국제규격을 정하고 있는 ISO 14000시리즈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ISO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규격에 따라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의 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규격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에는 환경경영관리시스템도 포함된다(법 제21조제2항제5호).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환경경영촉진을 위하여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 표준시리즈)을 도입할 수 있으며(법 제

23) 환경부, 2002 환경백서, 2002. 11, 109면.

24조제1항),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24조제2항).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인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24조제3항).

이와 같이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관리·운영 및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시리즈)의 도입과 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민간기구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환경법규의 준수 및 친환경적 기업활동을 통한 환경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통한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인증해 줄 수 있는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

1) 연혁과 구성

이 법률은 법률 제5085로써 199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중인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 등 우리 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률은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되었는데, 2001년 12월 31일의 제6차 개정까지는 주로 타법의 개정을 통한 개정이었으므로 중요한 내용의 개정은 없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14일의 개정은 동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경영체제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 온 것이었다. 즉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그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첫째, 정부는 환경경영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작성·유지하여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구매가 촉진되도록 하였다(법 제15조). 둘째,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사업을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민간법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종전의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였다(법 제16조). 셋째, 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및 산업부산물의 교환 등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기업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17조).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환경경영체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원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원자격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경영체제가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다(법 제22조의 삭제).

이 법률의 구성은 모두 5개의 장, 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 제2장은 환경친화적인 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제3조(종합시책), 제4조(산업환경실천과제),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지원), 제7조(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제8조(청정기술의 이전·확산),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0조(환경설비품질인증), 제11조(공제사업),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제13조(민간추진본부) 및 제14조(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환경경영촉진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15조(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등), 제16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제18조(환경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 및 제19조(환경경영에 관한 진

단·지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4장은 보칙규정으로서 제25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와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은 벌칙규정이다.

2) 주요내용

(가) 종합시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1항). 종합시책은 ①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②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표의 설정, ③생산공정개선·청정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방법, ④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환경설비산업의 육성방안, ⑤환경경영의 촉진방안, ⑥그 밖의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3조제2항).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친화수준·에너지소비수준·공업용수수준·자원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법 제3조제3항), 종합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3조제4항).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데(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이러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는 ①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재생자원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②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유통단계에서의 환경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④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⑤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법 제4조제2항).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조제3항).

(나)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법 제5조제1항). 또한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청정생산기술, ②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지원 요청한 기술, ③환경설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1항).

(다) 환경설비품질인증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의 품질 및 기술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법 제10조제1항), 환경설비를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10조제2항).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환경설비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라) 환경경영의 촉진

정부는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환경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사업자단체는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작성·유지하고,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①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②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③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수행한다(법 제16조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법 제16조제2항), 인정기관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및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3항).

산업자원부장관은 ①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②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③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④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⑤국내의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그리고 정부는 환경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법 제18조제1항), 환경경영의 보급을 위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법 제18조제2항).

3) 결 어

이상과 같이 이 법은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 및 그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체제 인증 및 운영에 관한 국제규격과의 조화 및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

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관한 전담부처는 환경부이므로 환경경영체제 인증 및 인증심사원의 양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는 연방환경부, 미국의 경우는 연방환경청이 환경경영체제에 대하여 관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환경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관할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 법의 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항).

2) 환경표식의 인증

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을 인정할 수 있다(법 제20조제1항).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21조제1항).

3) 환경성적표식의 인증 등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자로서 인증심사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심사원의 관리, 인증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1조제2항 및 시행령 제36조). 또한 환경부장관은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법 제21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①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인증기준 및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⑤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22조).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법 제23조제2항),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3항).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4) 환경표식 등의 사용

환경표식 또는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에 따라 환경표식 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식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법 제25조제1항). 그러나 환경표식 등의 인증을 얻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식 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식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5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식의 인증을 얻은 자가 ①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②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환경표식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③환경표식의 인증을 얻은 제품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식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6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식을 표시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29조제1항).

5) 결 어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기관이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에 따라 환경표식 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식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자기 기업이 환경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고, 환경의식이 깨어있는 소비자들은 그러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성적표식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표식을 표시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환경친화제품에 대하여 인정될 뿐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 인정되는 인증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친환경적으로 기업경영을 한 기업자체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개별적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것이므로 환경경영감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환경경영에 적합한 기업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간접적으로 환경경영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4) 그 밖의 관련법

1)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법 제10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0조의2제3항).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도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2).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10조의2제3항).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에 있어서 해당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시행규칙 제20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1조).

3) 소음·진동규제법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0조제1항).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20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그리고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기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성평가에 관한 서류와 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4)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가) 목 적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1995년 4월 14일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이 환경부의 예규로 제정됨으로써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1월 31일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에 관한 고시가 제정

되었다. 이 고시는 2001년 6월 8일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²⁴⁾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환경친화기업의 개념

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은 최고경영진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제2조).

(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 기업을 포함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환경관리현황, 환경성 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이하 “환경개선계획서”라 한다) 10부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환경관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사업장 내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제3조제2항). 단위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제3조제3항).

(라) 환경개선계획서의 내용

환경개선 계획서에는 ①사업활동의 개요, ②환경관리 일반현황, ③사업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④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

24) 환경부 고시 제2001-78호.

현황, ⑤환경개선계획, ⑥기타(신청기업에서 환경개선계획 이행시 심사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가 포함된다(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환경관리 일반현황에는 ①경영층의 환경경영 의지, ②환경관리체계 구축현황, ③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현황, ④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현황, ⑤환경보전 관련활동 및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현황, ⑥환경관련 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민원 발생현황이 속한다(제4조제1호제3호).

사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①공정흐름도 및 원·부재료 사용 원단위 분석(제조업에 한함), ②투입·배출물질(원료, 용수, 연료사용량 등)에 의한 물질수지표(제조업에 한하며, 단위공정별 물질수지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 물질수지표와 주요공정별 물질수지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분석(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분석), ④주변 환경질과 사업장 배출오염도 비교 및 국내·외 유사업종과의 환경성 비교분석 등을 포함한다(제4조제1항제3호).

그리고 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현황은 ①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개발·적용,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보고서 및 환경회계 도입 등 환경경영 현황 및 성과, ②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현황 및 분야별(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 관리 및 개선현황, ③유독물의 제조·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 ④기타분야 환경관리 및 개선현황 (소음·진동, 악취, 토양, 지하수, 위탁처리 관리, 환경보전활동 및 국제환경협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다(제4조제1항제4호).

환경개선계획은 ①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개발·적용,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보고서 및 환경회계 도입 등 환경경영 개선계획, ②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 및 분야별(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③유독물의 제조·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④기타분야 환경개선계획(소음·진동, 악취, 토양, 지하수, 위탁처리 관리, 환경보전활동 및 국제환경협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다(제4조제1항제5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서의 내용 중 제1항 제2호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경영영체제인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제4조제2항).

(마) 신청자격의 제한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업은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신청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첫째,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서 개선명령, 사용금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확인과 관련된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았거나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제5조제1항제1호),

둘째,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제5조제1항제2호),

셋째,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으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제5조제1항제3호),

넷째, 신청당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기업(제5조제1항제4호).

그러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기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일시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제5조제2항).

(바) 환경친화기업의 심사 및 지정

환경관리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격제한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채취·검사결과, 신청서류의 하자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별표1의 『환경친화기업지정 평가기준(환경관리 일반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이상이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제6조제2항).

환경관리청장은 현지실사 결과 환경개선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환경개선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된 환경개선계획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제3항). 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단의 평가결과가 별표1의 『환경친화기업지정 평가기준(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의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심사단의 평가결과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제6조제4항).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실·국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신청기업에 한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제6조제5항).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장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

식의 지정현판을 송부하여야 한다(제6조제6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환경친화기업”이라 한다)이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하고 5년간의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제6조제7항).

(사) 환경친화기업 심사단의 구성 및 심사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장 소속 하에 심사단이 설치되는데(제7조제1항), 심사단은 환경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관리청장이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및 현장실무에 능통한 환경친화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제7조제2항).

환경관리청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단 중에서 심사위원 5인 내지 10인을 선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한 현지실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환경경영과 환경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2인 내지 5인을 선정한다(제7조제3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현지실사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7조제4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관리 일반현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고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만 평가한다(제8조제1항). 환경친화기업 재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관리 일반현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 평가시 별표1 나.(2)의 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현황에 대한 항목은 만점으로 평가하여 처리한다(제8조제2항).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연중 계속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관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지실사 및 평

가를 완료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를 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제2항). 환경관리청장이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환경친화기업 신청기업에 대하여 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와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조제3항).

(아)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동안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를 신고로 대체, ②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의 검사면제, ③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기술진단, ④중소기업의 경우 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 신청시 우선순위 적용, ⑤각종 표창시 우선 순위의 적용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제11조). 이를 통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친환경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환경개선계획 이행여부의 확인 등

환경관리청장은 환경친화기업이 부도 등으로 환경개선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계획서에 제시된 일정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제13조제1항). 환경관리청장은 환경개선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환경개선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제13조제2항).

환경친화기업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 환경관리청장에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의 당해 연도 이행실적과 다음연도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3/4분기 이후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환경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은 환경친화기업이 제출한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별표2의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제14조제2항).

환경관리청장은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시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4조제3항). 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 후에는 그 평가결과를 해당 환경친화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제4항).

(카)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서 개선명령, 사용금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확인과 관련된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았거나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셋째,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넷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섯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 이행상황 평가결과 80점 미만인 사업장

여섯째,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일곱째, 폐업하거나 휴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재 가동하지 않는 경우

여덟째,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의 당해 연도 이행 실적과 다음연도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15조제1항)

그리고 환경관리청장은 환경친화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제15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기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일시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시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5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16조제2항).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진술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16조제3항).

(타) 그 밖의 사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친화기업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관련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채취·검사를 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등 순수한 조사 목적인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오염물질 채취·검사를 할 수 있다(제17조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가 부착된 환경친화기업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측정기기 운영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제17조제3항).

환경관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오염물질 채취·검사를 할 수 있다(제17조제4항).

그리고 환경친화기업이 분할 또는 매각(부분매각을 포함한다) 등으로 법인이 변경되어 환경친화기업으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방침 및 환경개선계획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서를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고 환경친화기업 지위승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요 원·부자재, 생산공정·시설 등의 변경으로 환경개선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

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위승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위승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위승계를 요청하여야 한다(제18조제2항). 환경친화기업의 지위승계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승인되어야 한다(제18조제3항).

환경지정심사와 관련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 심사와 관계된 자는 지정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또한 환경관리청장은 심사가 종결되면 지체없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개선계획서 중 관할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제18조제2항).

4. 결 어

국가표준기본법은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 기술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와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의 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규격과 일치에 대하여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에는 환경경영관리시스템도 포함된다.

그래서 국가표준기본법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경영촉진을 위하여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 표준시리즈)을 도입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중인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 등 우리 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은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민간인증체제의 인정,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 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자로서 인증심사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심사원의 관리,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의 관련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이에 관한 환경부의 고시가 있다. 이러한 법규정들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보고·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신청, 환경친화기업 심사 및 지정, 환경친화기업 심사단의 구성 및 심사,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법 제16조제2항), 인정기관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및 그 밖에 환경경영

체제에 관한 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3항). 그러나 앞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환경경영의 촉진과 환경경제체의 인증의 운영 및 관리는 그의 특성상 환경부장관의 관할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의 고시로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환경경영체제의 구축과 환경경영감사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양 부처사이에 사전협의를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를 통하여 관할을 일원화시키고 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장 환경감사제도의 도입필요성

제 3 장 환경감사법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제 1 절 OECD의 환경전략과 환경경영

1. 의 의

OECD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국가를 가맹국으로 하여 소위 경제·사회분야에 대한 연구·분석과 그것에 기초한 정책제안을 하며, 또한 국제적 정책협조를 위한 협의의 장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이며, 세계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원조 및 다각적인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하여 1961년에 발족되었다.

OECD는 경제성장(경제목표), 사회적 평등(사회목표) 및 건전한 통치(환경목표)의 통합을 이념으로 하며, 모든 시민이 적합한 생활수준, 개인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면서 OECD국가와 그 밖의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팽창하는 경제성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축한다. 선진국의 경제성장정책과 현재의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계속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호정책 및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원조가 무효화되지 않을까라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²⁵⁾

OECD는 그의 지도원칙으로서 1972년 국제경제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국내의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실시를 촉진하고, 그 환경정책이 국제차원에 있어서 무역의 잠재적인 왜곡효과가 나타나게되는 것을 완화함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오염자부담의 원칙, 조화원칙, 자국민우대·차별금지 및 수입과징금·수출할부원칙으로 구성된다.

25) OECD, Sustainable Development : OECD Policy Approaches for the 21th Century, Paris, 1997, p. 9.

2. 경제와 환경의 통합

(1) 국제협력에 의한 글로벌한 통합과 개발협력전략

국제협력에 의한 글로벌한 통합에 관하여 1990년대의 테마는 개발협력이었다. 즉 개발은 개발도상국내의 정치적 의사·능력 및 대중의 지지 에 근거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정한 국제적인 협력을 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협력과 개발도상국은 인간중심의 발전(생명·생활질의 개선)과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의 국제적 이동에 참가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²⁶⁾

개발협력전략의 목표는 빈곤과 투쟁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진정한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적 복지는 인류의 윤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청으로서 빈곤의 추방이며, 사회개발은 초등교육·성적 평등·기본적 보건위생·가족계획의 추진이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복원의 국가전략의 책정과 운영이다.²⁷⁾

(2) 경제와 환경의 통합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수단

부담금의 지불제도는 유럽동맹의 11개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환경세로서는 CO_x세, NO_x세 및 SO_x세가 있으며, 환경과징금으로서 는 폐기물처리과징금, 제품과징금이 있다. 이론상 적절한 과징금 및 조세 는 배출의 한계비용이 한계피해비용과 같은 점에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및 조세는 경영자에 대하여 그의 행동을 변화하게 하려는 암시를 주며,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²⁸⁾

과징금에서는 기업행동변혁의 가능성이 크며, 그 밖의 인센티브제도와 짜 맞추어져 업계의 자주적 협정의 촉진 등이 기대될 수 있지만, 과세에

26) OECD, op. cit., at. 17.

27) OECD, op. cit., at 22~23.

28) OECD, op. cit., at 41.

서는 정보의 수집, 오염원인특정, 세율의 문제, 배분에서는 누가 손해 또는 이득을 입을까라는 문제, 정치적으로는 오염면죄부, 윤리, 용도특정화의 문제, 국제무역상의 경쟁력배제의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는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조성 및 조세처리에 집중하며, 기득권의 우대와 실질상의 소득증가라는 문제가 있는 배출권거래와 환경을 개선하는 보조금은 예비적 조사 및 분석을 행하고 있지만, PPP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²⁹⁾ 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제적 빈곤에의 대처, 환경계획실시이행의 특정기간 및 국제무역·투자의 왜곡의 시정에 관한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한다.³⁰⁾

(3) 환경보호성과의 평가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에 대한 오염부하를 전체적으로 경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천연자원의 이용을 보증하는 각국의 환경정책에 관하여 그의 『비용 대 효과』를 각 국가의 대기, 물, 폐기물관리, 자연보호, 천연자원관리에 걸친 목표에 따라 측정하여 그 국가의 환경보전능력과 국제적 공헌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성과의 평가가 각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졌다.³¹⁾

(4) 소비와 생산패턴의 변혁

OECD는 현재의 레벨과 패턴의 『소비와 생산』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공통인식에 입각하여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관련한 환경의 질을 연계하여 세계화는 예를 들면 경제활동의 『탈물질화』를 촉진하고, 글로벌한 소비패턴은 소비의 세계적 균일화를 진척시키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진척시키지 못한다는 사태를 막고, 인간의 건강과 자연의 생태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는 환경문제의 지속적인 증대에 제동을

29) OECD, op. cit., at 60.

30) OECD, op. cit., at 41.

31) OECD, op. cit., at 66.

걸기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의 패턴의 변혁이 불가결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탈물질화』, 에너지 사이클과 경제성장의 분리, 공업프로세스의 폐쇄회로화, 재활용 등에 더하여 환경효율성을 고려한 『소비와 생산』의 패턴화, 소비패턴의 환경용량과의 일치를 추진하고, 그를 위해서 소비패턴의 『클린화』에 지향한 소비관습과 소비행동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도 및 생산패턴의 『클린화』를 경제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³²⁾

3. 무역 · 환경전략

무역위원회는 무역에 대한 각국의 환경기준의 차별화의 효과, 무임승차(free ride)벌칙, 무역조치로서의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환경정책위원회는 또한 환경의 질과 환경대책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의미를 검토하여 1988년 환경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OECD는 환경목표의 달성과 개방적 다각무역의 유지와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가 불가결함으로 1991년 무역 · 환경공동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5년 OECD 각료회의에 보고한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①무역자유화가 경제발전 및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이 상호 조화되어야 한다. ②환경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보상하기 위한 환경 상계 관세나 보호주의적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 ③국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조치는 WTO원칙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수입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타국의 환경정책의 변화를 위한 무역규제는 허용될 수 없다. ④월경적(越境的), 국지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환경협약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가능하며, PPMs³³⁾에 기반을 둔 무역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나 각종 경제적 수단이 불필요한 무역제한의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투명성의 확보, 국제적 조화

32) OECD, op. cit., at 92.

33)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을 의미한다.

와 상호 인증, 국경세 조정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내용은 구체적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OECD의 입장으로 반영되고,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국가간 환경요건의 차이가 새로운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가별 환경관련규격의 조화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는 1993년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담당할 기술위원회(TC 207)³⁴⁾를 발족시켰다. TC 207의 표준화작업은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그 주제로는 환경경영체제(EMS), 환경감사, 환경마크, 환경성과평가, 전 과정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ISO가 추진하는 환경경영분야의 국제표준규격은 각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권고사항으로 국가차원에서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차원을 넘어 기업이 얼마나 우수한 환경방침, 환경정책, 환경관리조직을 갖추고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4. ISO 14000시리즈

ISO 14000시리즈는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자율규제이다. 그의 제정과정은 미국의 민간환경규제인 『CERES원칙』이 국제사회의 장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과정과 같았다.³⁵⁾

34) Technical Committee 207로서, ISO 14000 시리즈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35) 『CERES원칙』은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사회적 투지기관(프랜크린사 등)과 환경보호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합조직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협의회(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가 1989년 9월 7일 작성하여 발표하였던 『환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기준 및 기업이 환경문제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행할 때의 판단 기준』이다. 이 원칙은 전문에 『기업과 그의 주주는 환경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ISO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인회의(BCSD)³⁶⁾의 요청을 받아 1993년 TC207(환경관리전문위원회)을 설치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 규격 ISO 14000시리즈의 책정에 향한 검토를 되풀이하여 다음 같은 것이 발효되었다.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방법 및 이용안내(1996년 9월)
- ISO 14004: 환경경영시스템 - 원칙, 시스템 및 지원기술의 일반지침
- ISO 14010: 환경감사의 지침 - 일반원칙
- ISO 14011: 환경감사의 지침 - 감사절차-환경경영감사
- ISO 14012: 환경감사의 지침 - 환경감사자의 자격기준
- ISO 14020: 환경마크 - 일반원칙
- ISO 14021: 환경마크: 자기선언에 의한 환경주장
- ISO 14040: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원칙과 구조
- ISO 14041: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분석 등
- ISO 14050: 환경용어

ISO 14000시리즈는 국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한 산업계현장』, EU 계획: 환경경영감사계획(EMAS), 영국규격협회(BSI)의 규격: BS 7750의 영향을 받아 발행되고 있다.

ISO 14000시리즈는 국제적 환경자율규제이며, 기업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채용이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리스크의 회피, 환경비용의 절감, 환경효율성의 향상, 환경이미지의 제고의 효과가 기대

지고 있다. 『이윤추구는 그것이 지구의 건강상태와 보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미래세대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을 결코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10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①생태권의 보호, ②천연자원의 지속적 이용, ③폐기물의 경감 및 적절한 처리, ④에너지의 보존, ⑤지역 및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위협의 경감, ⑥안전한 상품의 제공, ⑦환경의 회복, ⑧일반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⑨경영진의 참여, ⑩감사와 보고. CERES의 자세, 정신 및 포괄적인 환경원칙이라는 사고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산업계현장』(1991년), 『경제인연합지구환경현장』(1991) 등에 반영되어 최고경영층의 관여 및 환경감사의 실시는 ISO 14000시리즈에 규격화되어 환경보고서의 작성과 공개는 선진국에서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다.

36) 원문은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환경책임을 완수하는 데에 유효할 것이므로 ISO 14001의 인증취득은 진척될 것으로 생각된다.

5. ISO 14000시리즈와 앞으로의 전망

이와 같이 ISO 14000시리즈의 7개 초기 표준화 테마가 거의 마무리 되면 또 다른 중장기 테마에 대한 표준화 방법 및 하부구조의 설치가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위험도 평가, 환경적 설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장기 테마 외에도 초기테마의 기본규격에 대한 특정 업종별 적용기법과 지침에 대한 규격화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체제의 도입지침에 대한 규격화와 산업분야별 경영체제의 지침규격화이다.³⁷⁾

ISO 14000시리즈는 ISO 9000시리즈의 품질규격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영체제 규격의 문화가 이미 수립되었으며, 조직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규격은 국제규격의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며, 세계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O 규격제정에 따른 각 국가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사전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환경경영 및 환경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 2 절 유럽연합의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법

1. 의 의

유럽환경감사법은 유럽이사회와 이사회에 참가한 회원국정부의 대표자들의 결정을 통하여 채택된 1993년 2월 1일 제5차 행동강령³⁸⁾(지속적

37) 정영태, 전계서, 30면.

38) EG-ABl. C 138, S, 13 ff.

이고 환경친화적 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정책과 조치를 위한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제5행동강령은 특정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령과 금지를 가지는 법규정으로서는 불충분하고 모든 경제참여자와 사회구성원을 관여하게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환경정책이 종래의 법규정의 제정의 단계를 넘어서 시장에 방향을 설정한 조치와 그에 부수하는 수단들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5행동강령이 시장에 방향이 설정된 환경보호의 수단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제5행동강령을 계속적으로 실현하였다. 즉 환경정보에 관한 지침, 민간 개발계획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지침이 그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감사법도 포함된다.

또한 세계상공회의소의 취지서와 영국의 표준규격 7750이 유럽환경감사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영국의 표준규격 7750은 유럽환경감사법에 결정적인 모델이 되었다.³⁹⁾ 유럽연합은 1993년 6월 29일에 “환경경영”과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유럽연합제도에의 기업들의 자발적 참가에 관한 법⁴⁰⁾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유럽연합조약(EGV) 제130r조제2항),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⁴¹⁾

2. 유럽환경감사법의 환경 정책적 목표설정

(1) 효율적인 환경보호의 본질적인 조건으로서 친환경적 경영조직

종래에는 진보적인 환경기술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보적인 기술은 환경보호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경영조직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친환경적 경영조직은 효율적인 경영상의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

39) Sellner/Schnutenhaus, a.a.O., NVwZ 1993, S. 928.

40) Verordnung Nr. 1836/93 Abl. EG L 168/1.

41) Vgl. Art. 189 Abs. 2 EGV.

제조조건이다. 따라서 환경감사법은 적절한 경영조직의 형성을 통하여 경영상의 환경보호를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⁴²⁾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은 기업의 자원비용, 에너지비용 또는 폐기물처리비용의 절약을 통한 비용절감을 가져온다. 따라서 환경감사제도는 경제를 촉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개선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환경감사법은 제1조제2항에서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의 촉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환경매개체를 포괄하는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개선

현재까지는 각 국가의 국내법규정들은 각 환경매개체를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강하게 실시하여 왔다. 현행의 환경법에 있어서 환경경영에 관한 규정원칙은 특정한 환경매개체에 관련되어 있다. 즉 기업활동의 소재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영향의 총체적 고려는 환경보호를 보증하는 경영조직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유럽환경감사법은 기업에 있어서 환경매개체를 포괄하는 환경경영조직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⁴³⁾

(3) 개별적 시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재지와 관련한 환경보호의 개선

유럽환경감사법은 환경보호를 보증하는 국내의 법규정들에 비하여 개별적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의 적용범위는 오히려 생산소재지 전체에 미친다. 그러므로 여기에 경영상의 환경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커다란 기회가 존재한다. 환경감사제도에는 일정한 영업활동을 행하는 모든 기업들이 일정한 시설의 현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참가할 수 있다.

42) Vgl. M. Kloepfer, Betrieblicher Umweltschutz als Rechtsproblem, DB, 1993, S. 1129.

43) Vgl. Siegfried Waskow, Betriebliches Umweltmanagement, 1997, S. 20.

(4) 유럽연합회원국들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통일화

유럽환경감사법에 의하면 경영상의 환경정책을 확정하고 그 환경정책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환경영향을 경감할 의무를 지는 기업들에게만 환경감사 인증서가 허용된다(제3a조). 따라서 유럽환경감사법은 환경보호기술에 관한 한 통일적인 실질적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유럽연합의 기업들을 강제한다. 이러한 수단이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진정하게 도입되는 한 유럽연합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통일화가 강하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감사법에 대하여 찬성하는 자들은 이 환경감사법에 의하여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유럽연합차원에서 통일된 평가기준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명백하게 주장한다. 그 밖에 환경감사법은 환경보호에 관한 유럽법규정들의 집행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한다.⁴⁴⁾

3. 적용범위

(1) 영업활동

이 법의 적용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는 소재지에 한정된다(제3조제1항). 어떠한 영업활동이 여기에 속하는가는 제2i조에서 도출된다. 이 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3037/90 EWG의 의미에 있어서 영업활동은 광산개발, 토석의 채취행위 및 가공업의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을 말한다.

둘째, 영업활동에는 전기발전, 가스생산, 증기생산, 온수생산 및 고형 또는 액체 폐기물처리, 소각 또는 매립, 재활용과 관계되는 모든 소재지가 포함된다. 그와 동시에 에너지생산의 종류는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기발전은 모든 종류의 발전소(화력발전소, 가스발전소,

44) Vgl. Wolfgang Köck, Indirekte Steuerung im Umweltrecht: Abgabenerhebung, Umweltbeauftragte und "Öko-Auditing", DVBl. 1994, S. 33.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또는 태양에너지시설 및 풍력에너지시설)와 가스생산, 증기생산 또는 온수생산을 포함한다.

(2) 소재지관련성

유럽환경감사법은 소재지가 그의 조건들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⁴⁵⁾ 이는 기업의 소재지에서 이 법 제21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기업의 주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유럽환경감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 철도기업이 에너지생산시설, 목재 방부시설 또는 인쇄업을 운영한다면 소재지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유럽환경감사법에 의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4.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기업 내부적 의무

(1) 기업차원에서의 환경정책의 확정

유럽환경감사법에 의한 제도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그의 환경정책의 확정에 있어서 이 법의 일정한 전제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정책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이 법 제3a조와 부칙 I A 제1호 내지 제4호, C와 D가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a조는 환경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 법 부칙 I A 제1호에 의하면 환경정책은 문서의 형태로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문서에 있어서 개별적 기업의 환경문제에 관한 기업의 환경관련성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정책은 기업소재지의 활동의 범위 내에서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정책은 기업의 최고경영층에 의하여 문서로써 확정되어야 한다. 이 문서에는 기업의 전체적인 목표와 행동원칙을 확정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사실상 환경정책은 오래 전부터 대기업들이 우리 주변에서 행해왔던 관례에 따른다. 환경정책은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고려되어야만 한다. 즉 환경정책은 대기, 소음, 물, 폐기물, 토양 등의 매체, 위험방지, 기존

45) 유럽환경감사법 제8조제1항 참조.

의 혹은 새로운 생산방식,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계획, 경영상의 고유한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수입자, 계열기업, 공급자들의 환경관련 활동, 정보와 직원들의 교육, 공공사업 등에 걸쳐있다. 환경정책은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상황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특히 환경관리의 점검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은 직원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일반국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정책의 목표는 동법 제3a조에서 좀더 구체화되어 있다. 우선 모든 관련된 환경법규정들의 준수가 요구된다. 이는 기업이 이 법상 환경감사인증서로써 그 기업소재지의 친환경성을 문서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⁴⁶⁾ 기업은 환경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또한 기업은 환경정책에 경영상 환경보호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환경법의 준수를 넘어서 기업소재지에서의 환경영향을 경감시키는 것에까지 미친다.

이 법 제3a조는 환경정책에 확정되어야 할 목표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환경감사법 제3a조가 참조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부칙 I A 제3호에 의하면 기업의 환경정책은 부칙 I D에 제시된 행동원칙에 근거한다. 동법 부칙 I D는 또한 환경영향의 경감이 어떻게 달성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수단들은 우선적으로 조직적이고 부분적으로만 기술적 종류이다. 환경영향의 경감은 단지 부분적으로 기술의 투입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적의 유효한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환경영향은 조직상의 조치, 합리적인 생산계획, 에너지관리, 원자재관리 또는 폐기물관리를 통하여 경감될 수 있다.⁴⁷⁾

동법 제3a조에 의하면 환경영향은 최적의 유효한 기술의 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경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한 이용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 시설운영자가 기술수준에 의하여 필요한 소각시설의 고온운용이 경제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한, 그는 저온으로 소각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46) Siegfried Waskow, a.a.O., S. 58.

47) Vgl. Siegfried Waskow, a.a.O., S. 60.

최적의 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에 대한 전형적인 형태는 또한 이러한 기술의 관리를 포함한다.⁴⁸⁾ 기술은 독자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유용한 기술관리의 세목은 이 법 부칙 I D의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 투입된 기술의 원활한 운용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제4호가 필요한 조치와 조직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6호에 의하면 측정결과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현실화되어야 한다. 제8호에 의하면 특별한 절차와 관리절차가 완성되어야 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법 제3a조에 의하여 요구된 최적의 유효한 기술은 기업이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최고의 기술적 예방수단이다. 지속적인 개선에 관한 의무는 최적의 유용한 기술이 전적으로 투입된 곳에서 끝나게 된다.⁴⁹⁾

그러나 모든 환경영향들이 기술의 투입을 통하여 예방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환경감사법은 기술의 투입없이 그리고 경영조치만을 통하여 더 많은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동법 부칙 I D는 기업의 환경정책에 확정되어야 하는 유용한 경영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2) 환경감사의 실시

유럽환경감사법 제2b조에 의하면 환경감사는 환경과 관련된 질문, 영향 및 소재지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조사이다. 이러한 환경감사는 동법 제3b조에 의하여 부칙 I C에 규정된 측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규정들은 많은 문제를 미해결의 상태로 두고 있다.⁵⁰⁾ 즉 누가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한 환경감사절차가 있는지, 혹은 환경감사

48) Vgl, Gerhard Feldhaus, Umweltschutz durch Betriebsorganisation und Auditing, Dokumentation zur 17. wissenschaftlichen Fachtagung der Gesellschaft für Umweltrecht e.V., Berlin-Bielefeld, 1993, S. 58, 59.

49) Vgl, Gerhard Feldhaus, a.a.O., S. 46.

50) Vgl. Stefan Bräker, Die erste Umweltprüfung, Beratende Ingenieure, 1996, S. 38 f.

에 있어서 어떠한 시기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또한 감사가 특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감사는 일정한 감사기준의 기초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환경경영감사에 있어서는 경영상의 환경보호가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및 관련법규정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평가기준이 존재한다. 즉 환경공표의 유효선언에 대한 감사기준은 동법 제4조제5항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환경감사에는 첫 눈에 그러한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환경감사에서는 일정한 소재지를 위한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조직과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현재상황에 관한 순수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⁵¹⁾

환경감사법의 전체시스템은 최초의 환경감사의 기능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환경감사는 소재지와 관련된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제3c조). 따라서 환경감사는 환경경영감사와 유사하다. 또한 환경감사는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감사의 심사 및 적합성에 대한 기초가 된다. 환경감사와 환경경영감사는 평가기준으로서 환경법규정 및 기업의 환경정책에서의 비교적 일반적인 준칙을 사용한다. 또한 ISO EN 14001의 범위 내에서 환경정책의 확립의 환경측면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고, 그에 따라 환경정책의 준칙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감사와 환경경영감사의 이익상황은 같다고 할 것이다. 주어진 매개, 즉 환경법과 기업의 환경정책에 근거하여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동법 제2b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소재지의 모든 환경영향과 현재의 조직구조의 파악을 포함한다. 이러한 파악은 기업소재지에 대한 환경감사제도의 최초의 적용으로 인하여 후속하는 환경경영감사에 있어서 보다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환경감사와 환경경영감사는 서로 구별된다. 환경감사는 또한 환경정책에서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고 환경정책의 적합성을 요구하는 기업소재지의 환경문제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다. 최초의 환경감사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는 존재와 당위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써 환

51) Sellner/Schnutenhaus, Umweltmanagement und Umweltbetriebsprüfung("Umwelt-Audit") - ein wirksames, nicht ordnungsrechtliches System des betrieblichen Umweltschutzes?, NVwZ 1993, S. 930.

경감사에 있어서 부칙 II에서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규정들이 적절하게 적용되게 된다.⁵²⁾

환경감사는 환경감정사를 통한 감사와 유효선언에 기초가 되는 환경공표의 파악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의 법적 편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환경공표의 감사는 환경감사보고서와 환경공표 사이의 조정에 근거하며, 그래서 또한 환경감사가 환경경영감사의 절차보증과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감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도출된다.

환경감정사는 부칙 II C에 일치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그가 감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감정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환경감사프로그램은 환경경영감사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에 방향이 설정된다. 물론 환경감사의 일회성 및 환경감사의 시점에 있어서 아직도 미비한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의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감사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환경법규와 환경정책상의 일반적 지침의 준수에 대한 감사가 확정되어야 한다.⁵³⁾ 즉 무엇보다도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실태조사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환경감사의 내용은 부칙 I C에서 언급된 관점을 고려하여 기업소재지가 관련환경법규 및 기업의 환경정책상의 일반적인 요구들에 일치하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정책이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기업소재지의 활동의 환경영향과 현재의 환경경영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환경감사는 기업소재지의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확정에 대한 기초가 된다.

유럽위원회가 유럽환경감사법의 제정을 위하여 그 기초로 삼았던 1992년 3월 16일 영국의 환경 기술적 경영시스템에 관한 규범은 환경감사가 파악하여야 할 4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법률과 그 밖의 규정상의 요구사항,
둘째, 현저한 환경영향의 형량과 기록,

52) Vgl. Siegfried Waskow, a.a.O., S. 63.

53) Vgl. Siegfried Waskow, a.a.O., S. 64.

셋째, 현존하는 모든 환경 기술적 경영방법과 경영절차에 대한 심사, 넷째, 이미 발생한 사안과 법규정의 비준수에 대한 조사에 관한 정보 역류의 평가.

환경경영감사와는 달리 환경감사에는 일정한 평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기간의 확정은 환경감사의 시점과 관련이 있다. 기업소재지가 그 시점에서 환경법규정을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환경정책의 일반적 지침과 일치하였는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소재지와 관련한 환경프로그램의 확정

기업소재지의 환경프로그램은 기업의 환경정책에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이행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법 제3c조). 환경프로그램은 일정한 소재지에서 환경보호를 보증하여야 하는 기업의 구체적 목표와 활동의 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취해졌거나 고려된 조치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치의 실행에 대한 확정된 기한도 포함된다(법 제2c조).

형식적으로 고찰해 보면 환경프로그램은 최고경영자차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법 부칙 I B 제1호). 이는 종종 기업차원에서 될 수도 있다. 환경프로그램은 문서상 확정되어야 하고, 환경정책의 내용과 관련되어야 한다(법 부칙 I A 제1호).

취해져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부칙 I A 제5호는 목표의 실행에 관한 책임과 수단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재지관련 환경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부칙 I C에 언급된 관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⁵⁴⁾ 다시 말하면 소재지의 활동이 다양한 환경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 통제되고 경감되어야 한다.

기업은 모든 관련있는 기업차원에서 환경목표를 확정하여야 한다.⁵⁵⁾ 또한 환경목표는 환경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소재지차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유럽환경감사법 제2c조에 의하면 목표들은 따로 확정될 것이 아니라, 환경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가능한

54) Vgl. Anhang I A Nr. 3 der EG-Öko-Audit-Verordnung.

55) Vgl. Anhang I A Nr. 4 der EG-Öko-Audit-Verordnung.

곳에서는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개선이 양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시간적 조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우선 환경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환경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의무와 예방수단이 강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환경감사법은 환경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환경정책과 일치하는 목표들을 확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2c조 및 부칙 I A 제4호).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기업은 시간적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조건은 유럽환경감사법 자체로부터 나온다. 환경감사법에 의한 인증을 받으려는 소재지는 환경감정사를 통한 다음의 감사 때까지 모든 환경법규정의 준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공표의 유효선언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나 환경프로그램은 법 준수의 의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러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 경영상의 환경보호에 대한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법의 준수를 넘어서 것으로 생각하였던 추상적인 기업의 환경정책의 목표는 소재지 차원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⁵⁶⁾

(4)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

유럽환경감사법은 제12조의 의미에 있어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규범들이 첫째로 마련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법 제3c조에 의하면 환경경영시스템은 부칙 I의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부칙 I B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매우 비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요건들은 일반적인 기업경영에 관한 기업경영상의 기초⁵⁷⁾ 하에 훨씬 더 명료하다.

환경경영시스템의 부분은 최고경영자 차원에서의 환경정책, 환경목표, 환경프로그램의 확정, 심사 및 적합성이다. 유럽환경감사법은 환경친화적 조직구조의 확립, 환경사무에 대한 관리자의 임명 및 기업의 환경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직원의 참여, 직원의 교육, 기업의 환경보호에 관한 기업

56) Vgl. Siegfried Waskow, a.a.O., S. 66.

57) Vgl. Günter Wöhe,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Betriebswirtschaftslehre, 16. Aufl., München, 1986, 83 ff.

내외부적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관점이다. 기업이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정보시스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유럽환경감사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는 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 기업 내부직원 및 기업 외부사람에 있어서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의 증진(부칙 I B 제2호),
- 그의 특별한 의미가 기술되어진 소재지의 환경영향의 조사, 문서화, 감사 및 평가(부칙 I B 제2호 후단 및 제3호),
- 활동, 생산품 및 직무수행과 관련한 법규정, 행정규칙과 그 밖의 환경정책상의 요구에 대한 목록의 작성(부칙 I B 제3호 후단).

유럽환경감사법은 기업관리의 다양한 요소, 즉 구축조직과 과정조직, 환경에 중요한 활동의 규제 및 환경목표의 비준수에 있어서의 수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구축절차와 경과절차의 확정에 있어서는 구축조직과 과정조직의 범위 내에서 정보획득의 문제가 중요하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기능의 조사(구축)와 절차(과정)는 환경경영시스템의 과제이다. 경영의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은 환경과 관련된 구축조직과 과정조직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환경과 관련된 구축조직과 과정조직은 기업 내부적 환경정보에 일치한 기초 위에 마련될 수 있는 영업상의 임무분석에 근거한다.

과정조직은 환경에 중요한 모든 활동, 계약당사자에 있어서 환경요건의 유지와 준비, 환경에 중요한 과정 및 계획된 절차와 시설의 허가에 관한 문서화된 작업지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유럽환경감사법에 의하면 환경경영-문서화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경영시스템의 기술이고(부칙 I B 제5호제1문), 다른 하나는 환경프로그램에 확정된 환경목표의 달성과 경영시스템의 적용이 기록되어야 한다(부칙 I B 제5호제2문).

- 환경경영시스템의 기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존재한다.
- 환경정책,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의 제시
 - 구축조직의 기술, 즉 실마리기능과 책임성

- 환경경영시스템의 요소, 즉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및 환경경영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의 기술.

마지막으로 환경경영감사 또한 경영시스템에 속한다. 경영감사는 일반적인 경영학에 의하면 경영절차과정에 참가한 자들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과정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의 감정사에 의하여 실행되는 감독수단이다. 그러므로 환경경영감사는 독립된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의 감정사에 의하여 실행된다.

(5)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기업은 철저한 환경경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직, 경영, 운용 등이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며, 문서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감사이다. 이 감사는 3년마다 반복되어야 하며, 감사대상의 복잡성과 환경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이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다. 감사의 빈도는 기업의 활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경경영의 실태를 감사하는 사람들의 임무는 환경경영의 관계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감지될 수 있으며, 그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감사의 대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사 후에는 경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경영감사는 부칙 I C와 부칙 II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부칙 II는 일부는 품질경영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ISO 10011을 참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유럽환경감사법이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ISO 10011은 유럽환경감사법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칙 II는 다른 중요한 국제규범을 참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ISO는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감사규범 ISO 14010에서 14012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ISO 10011에의 참조는 항상 유효한 법이다. 따라서 부칙 II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⁵⁸⁾

58) Vgl. Siegfried Waskow, a.a.O., S. 75.

환경경영감사의 실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관점들이 구별된다.

- 어떤 자가 환경경영감사를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환경경영감사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는가?
- 절차는 어떠한가?
- 얼마나 자주 환경경영감사가 실행되어지는가?

유럽환경감사법 제2조는 어떤 자가 환경경영감사자로서 고려되는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4조는 다른 단어로써 경영감사의 사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그 밖에 ISO 10011-1 제 4.2호로부터 환경경영감사자에 대한 요건이 도출된다.

환경경영감사자로서는 기업에 종속되어 있거나 기업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조직이 문제된다. ISO 10011-1에 의하면 감사하는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 환경경영감사의 실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경영감사책임자의 결정이 요구된다. 경영감사책임자는 특히 경영감사자의 자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감사자의 선정에 협력하고, 감사계획을 세우고, 경영관리에 있어서 감사팀을 대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경영감사자들은 그들이 규제하는 활동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부칙 II C).

그 밖에 경영감사자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충분한 전문적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II C에 의하면 환경경영감사자는 전문적인 감사 활동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져야 하고 그가 감사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실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특히 환경경영, 기술, 환경문제와 환경법에 까지 미친다.⁵⁹⁾

환경경영감사에 있어서는 소재지의 환경보호질의 평가가 중요하다.⁶⁰⁾ 평가기준은 환경경영감사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온다. 환경경영감사자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존재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의하여 정해진 목표

59) Vgl. Siegfried Waskow, a.a.O., S. 76.

60) 유럽환경감사법 제2f조 및 부칙 2 E 참조.

들의 달성을 감사한다. 환경경영감사는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평가를 포함한다(부칙 II B).

환경경영감사의 절차는 ISO 10011-1과 유럽환경감사법이 규정하고 있다. 환경경영감사의 준비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ISO 10011-1 제 5.2.1호, 제5.2.2호, 제5.3.1호 및 이 법 부칙 II D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 부칙 II D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경경영감사의 계획은 환경경영감사프로그램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부칙 II D에서는 성질상 환경경영감사의 준비가 중요하다.

ISO 10011-1 제5.2.1호에 일치하여 환경경영감사프로그램은 환경경영감사자와 감사하여야 할 조직체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해당 조직체는 환경경영감사자에 비하여 환경경영감사프로그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ISO 10011-1 제5.2.2호에 일치하여 환경경영감사에 있어서 임무는 환경경영감사책임자를 통하여 개별적 경영감사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ISO 10011-1 제5.2.3호에 일치하여 필요한 과업문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영감사에서는 ISO 10011-1 제5.3.1호의 요건에 일치하는 실시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의하면

- 환경경영감사자와 기업경영자는 서로 소개되어야 한다.
- 환경경영감사의 범위와 목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 방법과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경영감사자들과 감사를 하여야 하는 단위 사이의 연락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필요한 수단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결과협약, 경영감사자와 기업경영자 사이의 중간협약에 대한 날짜가 확증되어야 한다.
- 환경경영프로그램의 불분명한 항목이 설명되어야 한다.

환경경영감사는 ISO 10011-1 제5.3.2호와 제5.3.3호에 일치하여 실시된다. 그에 따라 경영상의 환경보호에 대한 증거들이 수집되고 서류심사, 질문을 통하여 그리고 활동, 조건 및 상태의 관찰을 통하여 실시된다.⁶¹⁾

그리고 어떠한 확정이 오류 및 불일치로서 보고될 수 있는지가 문서화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⁶²⁾

최종적으로 환경경영감사팀은 환경경영감사의 보고서작성 전에 환경경영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기업경영자 및 해당 조직단위와 논의하여야 한다.⁶³⁾

부칙 II H는 환경경영감사의 빈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빈도는 환경경영감사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자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6) 환경공표의 작성

기업은 첫 번째의 환경감사 이후 또는 환경경영감사 후에 환경공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이것은 소재지 설명, 중요한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물의 발생, 원료의 사용, 물의 사용, 에너지의 사용, 소음 그리고 다른 환경측면에 대한 수치 보고를 요약함은 물론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의 설명과 다음 번의 환경공표의 기간과 승인된 환경감정사의 이름, 그리고 지난번 신고이후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들이 포함된다.

환경공표의 시점은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환경경영감사의 관점에서 기업은 환경공표의 제시에 있어서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다(제5조제1항). 기업은 경영감사의 주기에서 각 부분경영감사마다 환경공표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경영감사의 과정이 끝난 후 전체 감사주기에 대한 환경공표를 작성할 수 있다.

61) ISO 10011-1 제5.3.2.1호 참조.

62) ISO 10011-1 제5.3.2.2호 참조.

63) ISO 10011-1 제5.3.3호 참조.

환경공표의 내용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최초의 환경공표는 부칙 V에 언급된 사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환경공표는 일반공공을 위하여 작성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술적 문서도 첨부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법 제5조제3항은 상세함의 정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환경공표의 최소한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표의 대상은 소재지와 관련하여 기업이 모든 환경법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의 확정이다.

유럽환경감사법은 기업이 모든 환경법규정의 준수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제3a조), 이러한 환경법규정이 사실상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제8조제4항).

이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은 매년 단순화된 환경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영감사과정이 3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부칙 II H),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기업이 경영감사과정의 종료 후에 비로소 환경공표를 작성할 수 있는 선택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5조제3c항에 따라서 숫자에 의한 표시의 요약을 포함하여야 하는 단순화된 환경공표를 매년 중간기간에 할 수 있다.

단순화된 환경공표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게 인식될 수 없다. 이는 동법 제5조제5항제2문에 의하면 경영감사주기의 종료 후 비로소 유효하다고 공표되어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일반공공에게 알려져야 한다.

만약 환경감정사가 기업경영자에 대한 선행된 감정에 관한 보고서에서 다음 번의 환경경영감사의 종료까지는 환경공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확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6항에 의하여 단순화된 환경공표는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5. 환경경영규격과 관련한 환경감사법에 기초한 기업 내부적 의무

유럽환경감사법 제12조는 이 법과 개별 국가, 유럽과 국제규범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들이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규범을 적용하고 이 규범들의 준수에 관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제시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들 규범들에 정해진 환경경영시스템과 경영감사시스템에 대한 요건들은 유럽환경감사법상 기업 내부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들을 대체한다.

(1) ISO EN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EN 14000시리즈의 중심적인 규범은 ISO EN 14001이다.⁶⁴⁾ ISO EN 14001은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승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규범이다. 그의 수용은 미국, 캐나다, 일본, 자메이카, 탄자니아 등과 같은 국가에서와 같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보증되어야 한다. 이는 협상의 범위 내에서 이 규범이 실질적인 요구에 의하여 가능한 한 자유롭게 되기를 요구하였다. 거기에서 ISO 내에 하나의 표본규범이 있었다. 즉 품질경영 ISO 9000 시리즈였다. ISO EN 14001 부칙 C는 품질경영규격 9000과 환경경영규격 ISO EN 14001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ISO 9000시리즈의 기본적 이행은 내용상의 품질요건이 아니라, 생산품품질에 대한 내용적 요건의 달성을 위한 경영조직이며, 이는 또한 ISO EN 14001에 흡수되었다.

ISO EN 14001의 적용은 환경보호를 위한 최적의 결과에 대한 보증은 아닐 것이다.⁶⁵⁾ 따라서 ISO EN 14001은 환경과 관련된 구축조직

64) 이에 대하여 Peglau/Clark, The European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Regulation (EMAS)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ISO 14001, UTA, 1995, S. 66 ff.; Robert Oettl, Unsicherheiten mit EMAS und ISO, Beratende Ingenieure, 1996, S. 64 ff.

65) Vgl. Christopher L. Bell,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nd ISO 14001, Environmental Watch, Western Europe, 1995. 12.1, S. 5.

과 과정조직을 기술하는 실질적인 요구로부터 독립된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ISO EN 14001은 세계의 국가들에 있어서 환경입법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기업상의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규범의 세계적 효력은 공통의 승인을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ISO EN 14001에서의 실질적 요건의 고려를 저지하고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의 대상은 ISO EN 14001 제4.1절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조직들이다. ISO EN 14001 제3.12절은 조직을 독자적 기능 또는 행정을 가지는 등록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 공적인 또는 사적인 회사, 단체, 기업, 시설 또는 조합 혹은 그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계획에 대한 기초는 조직을 통한 환경정책의 확정이다(ISO EN 14001 제4.2절). 말하자면 환경정책은 조직의 환경보호와 관련한 조직의 최고경영자의 신조이다. 이 규정은 조직의 환경정책에 대한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요건을 설정한다. 형식적으로는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환경정책을 확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환경정책은 문서화되어야 하고 서면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공공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는 ISO EN 14001 제4.2절 제a조 내지 제d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관리자는 법률상 중요한 환경법규정의 준수에 대한 의무를 진다(ISO EN 14001 제4.2c절). 그 밖에 경영관리자는 환경정책이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의무를 포함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ISO EN 14001 제4.2b절).

ISO EN 14001 제4.2b절에 의하면 조직은 그의 환경정책문서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방지 의무를 진다. 이는 사실상의 기업의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지속적인 개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환경정책은 환경과 관련한 목표설정 및 개별적 목표의 확정과 평가에 대한 틀을 형성하여야 한다(ISO EN 14001 제4.2b절). 또한 이러한

요청은 사실상의 환경보호의 이행과 관련된다. 결국 조직의 환경정책은 조직의 활동, 생산품 또는 임무수행의 종류, 범위 및 환경영향과 관련하여 적절하여야 한다(ISO EN 14001 제4.2a절).

이와 같이 조직은 그의 환경정책문서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방지와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실질적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의무를 지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목표설정과 개별적 목표의 확정에 대한 틀을 규정하여야 한다.

ISO EN 14001에 의한 계획단계는 4개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즉 ① 목표확정의 기초로서 환경관점의 조사를 위한 절차의 도입(제4.3.1절), ②법률상 중요한 그리고 그 밖의 요구의 조사 및 접근용이성에 관한 절차의 도입(제4.3.2절), ③목표설정과 개별적 목표의 확정(제4.3.3절), ④목표설정과 개별목표의 실현을 위한 하나 또는 다수의 환경프로그램의 수립(제4.3.4절)이다.

집행단계로서 작업과정에서의 목표설정 및 개별목표의 이행에 대하여 제4.4.6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목표설정 및 개별목표가 사실상 달성되었는지를 감사의 범위 내에서의 통제와 심사가 통제단계에서 이루어진다(제4.5.1절 및 제4.5.4절). 마지막으로 시스템 평가의 단계에서는 목표확정 및 개별목표의 이행정도가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제A.6절 및 제4.6절).

(2) 환경감사에 관한 ISO 규격 14010, 14011 및 14012

ISO 규격 14010, 14011과 14012는 인증의 능력이 있는 기준이 아니라, 유럽환경감사법 제12조에 의한 인정의 능력이 없는 한 지침이다. ISO 14010은 모든 종류의 환경감사의 실행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다(Nr. 1 ISO 14010).

ISO 14011은 ISO 14010에 보충적으로 환경경영감사시스템감사에 대한 특별한 요구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임무, 책임 및 활동(제4.2절), 자발적인 감사의 실시(제5절), 감사의 시작 후의 결정(제5.1절), 감사의 준비(제5.2절), 감사의 이행(제5.3절), 감사보고와 기록(제5.4절) 및 감사종결(제6절)이다.

ISO 14012는 유럽환경감사법의 부칙 II C에서의 요건을 부분적으로 현저히 초과하는 환경감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감정사에 대해서는 높은 학교교육, 실무상의 경험, 감사에 대한 이론상·실무상의 교육인격성이 요구되고 있다.

6. 환경감사제도에 대한 기업 외부적 통제

(1) 유럽연합회원국들에 대한 감정사와 등록제도의 규정위임

유럽환경감사법 제6조는 환경감정사의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환경감정사의 허가에 관한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형식적으로 회원국들은 법 제6조제1항제2문에 근거하여 감정사의 허가를 위한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기관을 마련하거나 명명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회원국은 감정사의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럽환경감사법 제6조제1항제1문은 환경감정사에 대한 실질적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요청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실질적 허가기준은 전문성, 독립성 및 신뢰성이다. 이에 대해서도 회원국에게 위임을 하고 있다.

동법 제6조제1항은 환경감정사의 활동에 관한 감독을 규율할 것을 회원국에게 위임하고 있다. 부칙 III A Nr.5는 이에 대한 대강조건을 정하고 있다.

유럽환경감사법은 감사된 소재지의 등록에 관하여 회원국이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등록기관을 명명하여야 하며, 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럽환경감사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하고 등록된 소재지의 해당 당사자의 진술의 고려에 대한 절차와 등록의 잠정적인 취소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2항).

(2) 전체 감사법제도내에서의 허가제도, 감독제도 및 등록제도의 의미

환경감정사에 대한 허가요건의 규정작업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유럽환경감사법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환경

감사인증증표의 사용에 관한 권한과 기업에 대한 그 증표와 결부된 이익의 획득은 본질적으로 환경감정사의 감사결과에 근거한다. 환경감정사는 유럽환경감사법 제4조제5a항 내지 제5c항에 의하여 이 법의 일반적인 조건에 기초하여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 그리고 이 법의 요건에의 일치에 근거하여 환경경영감사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 밖에 환경감정사는 단독으로 환경공표가 신뢰할 만한지, 환경공표가 소재지에 대해 중요한 모든 환경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에 관하여 결정한다(제4조제5항). 이러한 규정들의 명백성은 환경공표의 유효 선언에 있어서 환경감정사가 어떠한 평가여지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한다.

환경감사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현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감사된 기업 소재지의 등록에 대한 각각의 제도이다. 소재지가 관련환경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환경관청이 통지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동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소재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잠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등록기관과 환경관청의 협력의 종류 및 방법은 환경감사인증증표의 안정성 및 공언의 힘에 대하여 결정적일 수 있다.

7. 인증절차

유럽환경감사법 제12조제1항제1문a에 의한 인증절차는 이론상 인증기관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증기관에 의하여 형식화될 수 있고, 유럽위원회를 통한 승인에 맡겨질 수도 있다. 이 법 제12조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할 인증절차에 대한 규정들은 그의 근거를 법률 또는 다른 법규범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자유로운 법규창조의 방법으로 형식화될 수 있다. 결국 그러한 규정들은 이 법의 환경감정사에 해당하는 요건과 동등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증실무에 있어서 인증의 시장성에 달려있으며, 그러한 한 통일적인 인증절차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증절차에는 인증기관의 독자적인 심사절차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의 전문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간단하게 결정될 수 없다.

8. 환경감사제도의 공개

유럽환경감사법 제3h조에 의하여 기업은 해당 소재지의 소재지 등록명부에 등록이 된 후 유효하게 선언된 환경공표를 그 국가의 일반공공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을 통한 비용부과에 대하여 유럽환경감사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사치스런 장비(다색인쇄, 삽화 등)로써 환경공표를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기업은 환경공표의 일정하고 적절한 수를 배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은 환경공표의 EU 외의 국가에로의 배포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법 제10조는 환경감사에의 참가공표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1992년 3월 그의 환경감사법의 초안에서 참가한 소재지에 관한 첨부 설명서를 가지는 환경감사마크(Logo)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유럽이사회의 협의에 있어서 유보입장이 강하게 대변되었다. 그래서 참가공표(Teilnahmeerklärung)라는 개념에 동의하게 되었다.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양식화된 꽃이 12개의 유럽별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유럽환경감사법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참가공표는 상품광고와 생산물 자체 또는 그의 포장에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환경마크의 부여에 관한 유럽적인 제도에 관계되는 이사회의 1992년 3월 23일 Nr. 880/92 EWG⁶⁶⁾에 대하여 경계를 긋고 있다.

하지만 참가공표는 예를 들면 소재지의 진열장, 편지지 위쪽에 인쇄된 부분, 기업의 환경공표, 소개책자, 언론정보 등에 사용될 수 있다.⁶⁷⁾

유럽환경감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부칙 IV에 따라서 참가공표에 어떠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참가공표에 기업의 환경보호의 특별한 경영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수정적·보충적인 부록을 수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

66) ABl. Nr. 99 vom 11.4.1992, S. 1.

67) Sellner/Schnutenhaus, NVwZ 1993, S. 931.

다. 국가적으로 합법화된 마크의 경쟁기회를 변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참가공표는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공표의 수정 및 보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록을 수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참가공표의 사용권한과 관련하여 법적 승계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유럽환경감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이 분할되는 경우, 그 마크를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법적 승계에 대해서 유럽환경감사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분할된 기업은 새로이 환경감정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9. 중소기업에서의 환경감사법의 적용과 참가의 촉진

중소기업이 환경경영 및 환경경영감사의 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은 환경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환경감사법 제2i조의 적용범위는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공업 그리고 영업활동을 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활동은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가진다. 특히 가공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국가와 시설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상 그리고 재정상 처분여지를 좁게 하는 법적인 제재를 피하고 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경비용을 지출한다. 특별한 경우에만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이 기업전략상 계획된 조치로서 행하여진다.⁶⁸⁾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경제부장관의 위탁 하에 1995년 3월에 실시된 조사는 중소기업의 유럽환경감사시스템에의 참가준비가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⁶⁹⁾ 따라서 중소기업에 있어서 유럽환경감사법의 적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소기업에서 친환경적 기업경영을 위한 실무고문은

68) UBA-Berichte 6/90, S. 83.

69) Das nordrhein-westfälische Wirtschaftsministerium, EG-Öko-Audits in nordrhein-westfälischen Unternehmen, 1995, S. 28.

환경감사시스템으로의 편입을 쉽게 할 수 있다.⁷⁰⁾

유럽환경감사법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화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법 제13조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적 조력을 목표로 하는 일정한 촉진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환경감사시스템에의 참가와는 별도로 그 기업에 유효한 환경법규정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공정과 부칙 I C에 의하여 환경에 중요한 관점의 한정된 수를 가지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그의 환경정책을 상대적으로 간명하게 형식화할 수 있다. 고용인들에 대한 환경정책의 전달은 많은 비용없이 가능할 것이다.

환경감사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자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있어서 환경감사는 그의 적용 비용 때문에 사실상 종종 기업경영자에 의하여 실행되고 외부의 비용이 드는 감사에게 위탁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비용과 감정을 위한 비용도 줄어든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경프로그램도 다루어져야 하는 관점의 한정된 수 때문에 한정된 범위를 가질 것이다.

환경경영문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내용과 범위에 의하여 제한될 것이다. 작업과정 또는 책임에 관한 일정한 기록은 기업의 규모에 일치하여 간단하게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업관리와 소재지관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환경경영감사에 있어서 경영감사의 주기는 부칙 II H에 의하면 종종 3년에 이른다.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환경공표에 수용될 수 있고, 환경공표에 이러한 요소들이 간단하게 파악될 필요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의한 환경공표의 작성은 간소화된다. 환경공표의 매년 작성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종종 불필요할 것이다(제5조제6항). 환경공표의 기술적 작성을 위한 비용은 적게 소요될 수도 있다.

유럽위원회는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침을 공포하였다. 즉 1995년 9월 5일 유럽위원회의

70) Grund/Gebhard/Hubert Peter/Kaus/Sanfleber/Siebert, Umweltschutz - die Herausforderung meistern, Düsseldorf, 1995.

일반지침 XXIII은 촉진정책을 발표하였다.⁷¹⁾ 이를 통하여 유럽 전체에 750개 중소기업이 환경감사의 도입에 있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 밖에 1996년 3월 16일 일반지침 XI은 중소기업촉진프로젝트를 규정하였다.⁷²⁾

제 3 절 독일

유럽환경감사법은 환경감정사(Umweltgutachter)의 허가와 그의 활동에 대한 감독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유럽환경감사법이 제정되고 난 후 이미 1993년 여름 독일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의 대상은 허가기관, 감독기관 및 소재지등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관을 국가기관의 형태 또는 경제자치행정조직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이러한 논의는 1994년 12월말과 1995년 1월초에 연방환경부의 감독 하에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DAU)의 형태로 하는 협상모델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1995년 12월 7일에 “환경감사법”⁷³⁾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독일은 환경감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이 정비된 것이다.

1. 환경감사법의 목표와 적용범위

(1) 목 표

유럽연합의 환경감사법은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환경경영의 확립과 전환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기업은 환

71) ABl. Nr. C 231, S. 13.

72) ABl. Nr. C 76, S. 18.

73) BGBl. I, S. 1591. 동법률은 1995년 12월 15일자로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법의 정식명칭은 “Gesetz zur Ausführung des Verordnung (EWG) Nr. 1836/93 des Rates vom 29. Juni 1993 über die freiwillige Beteiligung gewerblicher Unternehmen an einem Gemeinschaftssystem für das Umweltmanagement und die Umweltbetriebsprüfung (Umweltauditgesetz)”이다.

경관법규를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경영상 적절하고 지속적인 환경 보호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자기의무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성장은 가능한 한 환경을 보호하는 경영활동과 결부되어 진다. 또한 기업은 특히 자기들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환경영향에 자체책임을 지닌다. 더 나아가 기업은 자기의 활동상 환경에 중요한 측면에 대한 공공일반의 관심 또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⁷⁴⁾

환경감사제도의 목표는 기업들에게 환경보호가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조직, 조정, 규제될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환경감사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강제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자체책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동 제도에의 참가는 의무적이지는 않고 다만 자발적이다.⁷⁵⁾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빈번한 국제적 관계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환경감사의 관념에 익숙해져왔다. 이에 반하여 중소기업은 환경감사제도에 회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에 소요되는 많은 경영관리의 소모와 이에 따른 비용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비용은 외부의 환경고문의 영입, 환경감정사예의 환경업무의 위탁, 해당 회사직원의 교육 및 재교육 등에 주로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복잡한 경영과정과 생산공정 때문에 한 개인의 전문지식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환경감정사팀이나 환경고문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 비용부담을 두려워하게 된다.⁷⁶⁾ 이에 따라 환경감사제도에의 자발적 참가가 종종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는 단지 한 측면에 불과하다. 즉 단기적인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장기적인 이윤획득의 최적화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영합리화, 비용절감의 잠재력과 마케팅의 장점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강화와 정보교환의 잠재력을 심어주고, 위험최소화와 비용방지의 가능성을 열어준다.⁷⁷⁾

74) Vgl. Präambel der EG-Öko-Audit-Verordnung.

75) Art. 1 Abs. 1: Art. 10 Abs. 3 der EG-Öko-Audit-Verordnung.

76) P. Kothe, Das neue Umweltauditrecht, München 1997, S. 13 f.

77) P. Kothe, a.a.O., S. 14.

유럽환경감사법 제1조제2항은 기업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감사제도는 이에 참가하는 기업에 친환경적인 경영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경영상 환경보호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자발적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자체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적용범위

유럽의 환경감사제도에는 하나 또는 여러 소재지에서 “영업활동(gewerbliche Tätigkeit)”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다.⁷⁸⁾ 유럽환경감사법 제2j조에 의하면 동법상의 기업은 일정한 소재지에서 그 영업활동에 대한 경영감사를 행사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모든 생산공장과 가공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기발전, 가스생산, 온수생산과 재활용, 폐기물관리를 하는 기업도 그 예외는 아니다(유럽환경감사법 제2i조와 제3조).

환경감사절차와 환경인증의 대상은 개개의 기업이나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기업의 하나 또는 여러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단위, 즉 구체적인 소재지(konkreter Standort)이다. 유럽 환경감사법 제2k조는 구체적 소재지를 일정한 소재지에서 기업의 통제하에 영업활동이 되고 있는 지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원료, 부대생산물, 중간생산물, 최종생산물과 폐기물의 저장창고와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이용되어진 기업의 설비와 주요시설에 속하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소재지는 모든 고착성과 비고착성 시설과 부대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대를 말한다.⁷⁹⁾

78) Vgl. Art. 3 Abs. 1 der EG-Öko-Audit-Verordnung.

79) Gerhard Feldhaus, a.a.O., S. 36.

2. 환경감사제도의 본질적 내용

(1) 환경감사제도의 기업 내부적 수단

1) 환경정책

어떤 기업의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에 대한 출발점은 기업의 최고경영층차원에서 확립된 환경정책이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정책은 환경감사제도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환경감사법의 의미에 있어서의 환경정책은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전체목표와 활동원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⁸⁰⁾ 여기에는 기업의 환경관련법규의 준수를 빼 놓을 수 없다(유럽환경감사법 제2a조). 기업은 기업경영차원, 즉 기업경영의 전체목표와 활동원칙차원에서의 일정한 환경정책을 명문으로 규정할 의무를 지닌다.⁸¹⁾ 기업의 환경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영상의 환경프로그램에 채택되지 않는 것은 환경경영제도와 환경감사제도를 통해서도 더 이상 받아 들여질 수 없다. 환경정책은 소위 “우수한 경영실현”이라는 목록을 통하여 윤곽이 잡혀진다.⁸²⁾ 환경정책에 고려되는 것은 주로 환경매체에의 영향, 에너지부문, 원료와 폐기물부문, 소음방지(Lärmschutz), 생산계획, 수송과 공급관계, 사고에 대한 사전배려(Störfallvorsorge) 등이다.⁸³⁾ 환경정책의 목표는 경제적으로 수인가능하고 운용 가능한 최적기술⁸⁴⁾의 투입을 통하여 도달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환경침해를 줄이는 데에 있다.

80) Vgl. Art. 3 der EG-Öko-Audit-Verordnung.

81) Vgl. Art. 2a der EG-Öko-Audit-Verordnung.

82) Anhang I Teil D der EG-Öko-Audit-Verordnung.

83) Anhang I Teil C der EG-Öko-Audit-Verordnung.

84) 이는 환경전체(Umweltinsgesamt)에 대한 배출(Emission)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또는 사전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규제치(Emissionsgrenzwerte)에 대한 기준으로서 전문기술의 실질적인 적합성을 제시하는 경영절차, 활동과 방법에 대한 발전의 최신의 수준을 의미한다. J. Falke, Umwelt-Audit-Verordnung. Grundsätze und Kritikpunkte, ZUR 1995, S. 6.

기업의 환경정책은 환경관련법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상의 환경보호의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⁸⁵⁾ 이것은 환경법상의 집행결여⁸⁶⁾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환경관련법규에는 유럽연합의 법규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환경관련법규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자기 소재지에 유효한 유럽의 환경관련법규와 해당 회원국의 환경법규를 참작하여야 한다.⁸⁷⁾ 유럽환경감사법의 의미에 있어서 환경관련법규에는 질서법상의 규정만이 고려되지, 일반 불법행위법(Deliktsrecht)에서 도출되는 환경관련 의무사항은 제외된다. 이는 첫째로 유럽환경감사법이 환경관련법규의 용어를 환경담당 집행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유럽환경감사법 제8조제4항). 둘째로는 책임법적으로 근거 지워진 주의의무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요구될 수 없다는 사고에서 도출된다.⁸⁸⁾ 독일 환경감사법 제15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환경감정사는 소재지를 조사할 때 연방과 주의 해당 행정규칙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이에 해당 법률과 법규명령은 물론이고 행정규칙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⁸⁹⁾

2) 최초의 환경감사

기업은 소재지와 관련하여 최초의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⁹⁰⁾ 동 환경감사는 해당 소재지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 환경영향과 경영상의 환경보호에 대한 제일차적인 광범위한 조사이다.⁹¹⁾ 이 감사는 최초로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전적으로 실시된다. 유럽환경

85) Anhang I Teil A Nr. 3 Abs. 2 der EG-Öko-Audit-Verordnung.

86) 독일 환경법상의 집행결여의 실상에 대하여 김현태, 독일환경법상의 행정구제법,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31면 이하 참조.

87) Vgl. Gerhard Feldhaus, Umwelt-Audit und Betriebsorganisation im Umweltrecht, in: J. Kormann (Hrsg.), Umwelthaftung und Umweltmanagement, 1994, S. 9, 19.

88) W. Köck, Das Pflichten- und Kontrollsystem des Öko-Audit-Konzepts nach der Öko-Audit-Verordnung und dem Umweltauditgesetz, VerwArch Bd. 87 (1996), S. 653.

89) Vgl. W. Köck, VerwArch Bd. 87 (1996), S. 653 f.

90) Vgl. Art. 2b der EG-Öko-Audit-Verordnung.

91) Vgl. Art. 2b der EG-Öko-Audit-Verordnung.

감사법은 환경감사의 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환경감사의 결과는 기업이 규정하고자 하는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기초가 된다.⁹²⁾ 환경감사의 기능은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감사와 적응에 대한 기초가 되는 환경경영감사의 기능과 유사하다.⁹³⁾ 환경감사는 광범위하게 평가된 현안조사로써 종결된다. 현안조사에는 특히 환경상황과 환경법의 상황을 내포하는 경영상의 환경장부의 작성이 속한다. 환경상황에는 특히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즉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폐수의 하천유입, 폐기물에 대한 보고, 토양오염, 물-, 에너지-, 원료소비 및 열과 소음의 배출을 의미한다.

3)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

기업은 환경감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소재지에 대한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한다.⁹⁴⁾ 환경목표는 기업이 경영상의 환경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목표이며, 기업의 환경정책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경목표는 환경영향의 발생방지, 감소, 제거를 위한 기업 내부적 지침이다.⁹⁵⁾

환경프로그램은 일정한 소재지의 환경보호를 보증해야 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 및 이러한 목표의 실현에 투입되었고 투입될 수 있는 조치들과 이 조치의 실현에 확정된 기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⁹⁶⁾ 환경보호의 목표는 기업이 자기의 경영상 환경보호를 위해 설정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환경정책상 규정된 의무들의 이행에 기여한다.⁹⁷⁾ 개개의 소재지에 대해 준비되어지는 환경프로그램의 기초는 최초 환경감사의 결과들이다. 환경프로그램은 또한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포함한다. 새로운 또는 변경된 생산품, 즉 생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환경

92) Vgl. Art. 3c der EG-Öko-Audit-Verordnung.

93) Vgl. Siegfried Waskow, Betriebliches Umweltmanagement. Anforderungen nach der Audit-Verordnung der EG, 1994, S. 36.

94) Art. 3c Satz 1 der EG-Öko-Audit-Verordnung.

95) Vgl. K.-P. Henn, Auf Herz und Nieren prüfen, Müllmagazin 1993, S. 11.

96) Vgl. Art. 2c der EG-Öko-Audit-Verordnung.

97) Vgl. Art. 3c der EG-Öko-Audit-Verordnung.

프로그램들이 설정될 수 있다.⁹⁸⁾

환경프로그램은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의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⁹⁹⁾ 이와 같이 기업은 동적인 자기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환경프로그램도 유동적인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4)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은 전체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에 해당되며, 환경정책의 실현과 확립을 위한 조직구조, 행동방식, 담당부서, 형식적 절차, 수단과 과정을 포함한다.¹⁰⁰⁾ 환경경영시스템은 한편으로는 환경보호를 보증하는 경영조직의 수단적 전제조건을 설정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은 해당 소재지에서의 기업활동의 환경영향에 대한 감사에 대한 구체적 필요조건을 정한다. 유럽환경감사법 제3c조에 의하면 기업은 환경감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한 소재지의 모든 활동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직상의 전제조건 이외에도 환경경영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활동상의 환경영향의 심사, 평가와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환경감사법은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하여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기업 내에서의 환경보호에 방향 설정된 구조조직의 설립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5) 환경경영감사

환경프로그램이 설정되었고 환경경영시스템이 확립된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에 대한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가 실시된다.¹⁰¹⁾ 환경경영감사는 소재지와 관련된 기업 내부의 경영감사를 의미한다.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는 환경감사제도의 핵심부분에 속한다. 환경경영감사는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조직, 경영과 과정의 성과에 대한 시스템적, 정규적, 객

98) Vgl. Teil A Anhang I der EG-Öko-Audit-Verordnung.

99) Vgl. Art. 3c der EG-Öko-Audit-Verordnung.

100) Vgl. Art. 2e der EG-Öko-Audit-Verordnung.

101) Art. 3d der EG-Öko-Audit-Verordnung.

관적 그리고 문서화된 평가를 포함하며, 둘째, 환경과 관련된 행동방식에 대한 경영감독의 용이화와 환경보호영역에서의 기업정책의 정확한 평가에 기여해야 하는 경영수단이다.¹⁰²⁾ 따라서 환경경영감사는 기업내부의 경영감사자 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외부인 및 조직들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¹⁰³⁾

환경경영감사는 감사범위의 확정으로써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자는 특히 현재 유효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활동은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토론, 소재지의 환경보호의 질의 평가와 관련하여 서류와 서면상의 절차의 감사를 포함한다.

환경경영감사의 목표는 특히 현존하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환경경영시스템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법규범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경영시스템이 소재지의 환경관련 과제의 성취에 유효하고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¹⁰⁴⁾

환경경영감사의 실행절차에 관한 일반원칙은 유럽환경감사법 부칙 II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의 소재지가 법률상 그리고 기업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프로그램이 실현되고, 경영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국제표준협회 ISO 10011과 기타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 감사되고, 시스템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¹⁰⁵⁾

환경경영감사는 기업경영층을 위한 일정한 보고서의 작성으로써 종결된다. 환경경영감사의 확증과 결과에 대한 명백한 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 후에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¹⁰⁶⁾ 동 보고서는 현실상황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환경감사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환경경영감사 때에 파악된 감사범위를 문서화하고,

둘째, 기업의 환경정책과 경영상의 현실과의 일치정도와 소재지에서의 환경과 관련된 발달에 관한 정보를 기업경영층에 제공하고,

102) Vgl. Art. 2f der EG-Öko-Audit-Verordnung.

103) Vgl. Art. 4 Abs. 1 der EG-Öko-Audit-Verordnung.

104) Vgl. Anhang II Teil E der EG-Öko-Audit-Verordnug.

105) Vgl. Art. 2f der EG-Öko-Audit-Verordnung.

106) Vgl. Anhang II Teil F Nr. 1 Abs. 1 der EG-Öko-Audit-Verordnung.

셋째, 소재지에 대한 생태학적 영향의 감시를 위한 규정들의 유효성과 신뢰성의 상황에 대하여 기업경영층에 보고하고,

넷째, 요구되는 시정조치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데에 있다.¹⁰⁷⁾

6) 환경공표

최초의 환경감사와 모든 그 후의 환경경영감사 후 기업은 환경공표를 준비하여야 한다.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모든 기업소재지는 유럽환경감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환경감사와 후속되는 모든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후에 환경공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인에게 경영상의 환경보호 상황을 일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럽환경감사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환경공표는 특히 아래의 5가지를 포함한다.

- (1) 해당 소재지에서의 기업의 활동에 대한 보고,
- (2)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
- (3) 유해물질배출, 폐기물 발생과 원료소비, 에너지소비, 공업용수의 소비 및 소음과 기타 환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수적 통계
- (4) 해당 소재지에 대한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표명,
- (5) 차기 환경공표의 제안에 대한 일정,
- (6) 허가된 환경감정사의 성명.

더 나아가 소재지의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과 기업의 환경정책 및 경영상의 환경보호에 관계되는 요소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전에 실시된 환경경영감사에 대비하여 특별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유럽환경감사법 제5조제4항).

(2) 환경감정사에 의한 기업 외부적 환경감사

기업 내부적 환경감사에 근거하여 준비된 환경공표는 기업의 환경상황의 주관적 발표이다. 따라서 환경감사절차의 하나로서 환경감정사에 의한 환경공표의 외부적 법적 유효선언이 요구된다. 환경감정사는 해당기업의 환

107) Vgl. Anhang II Teil F Nr. 2 der EG-Öko-Audit-Verordnung.

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 환경경영감사와 환경공표가 유럽환경감사법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심사한다.

환경감정사와 환경감정조직에 대한 허가와 그의 감독 및 감정된 소재지의 등록은 독일 환경감사법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환경감사법이 환경감정사의 허가와 감정사에 대한 감독을 각 회원국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1) 환경감정사의 허가

환경감정사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독일 환경감사법 제2조제2항). 환경감정사는 그에 요구되는 교육과 경험을 가져야 하며, 감사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환경감정사 협회로서는 사단법인,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유한회사(GmbH), 등기된 협동조합,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합자회사가 허가될 수 있다(독일 환경감사법 제2조제3항). 환경감정사협회는 적어도 3분의 1의 인적 책임을 지는 사원이 환경감정사로서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조합원, 이사, 회사대표가 환경감정사로서 허가되어진 경우에 허가되어 질 수 있다.

유럽환경감사법 제6조제4항에 의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만이 환경감정사로서 허가되어진다. 독일 환경감사법 제4조제1항도 동법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서 요구되는 요건 이외에도 환경감정사의 임무수행상 요구되는 신뢰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허가받은 환경감정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첫째, 환경감정사는 감정의 대상인 기업과 종속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감정사는 자기의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자기의 독립성과 감정적 활동의 통일성이 문제의 여지를 가지게 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 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¹⁰⁸⁾

둘째, 환경감정사는 소재지의 경영감사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

108) Vgl. Art. 2m, Anhang III Teil A Nr. 1 der EG-Öko-Audit-Verordnung.

다.¹⁰⁹⁾ 따라서 동일한 감정사 또는 연구소에 의한 기업 내부적 경영감사와 외부적 감사는 배제되어진다.

독일 환경감사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환경감정사는 허가조건인 심사시에 방법론(Methodik),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기업경영, 기업경영상의 환경사무, 기업의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적 관계와 경영상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자기의 전문지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감정사의 허가심사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에 대한 증명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독일 환경감정법 제8조는 전문지식에 대한 자격증 취득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은 우선 특정한 전공부문의 대학졸업과 기능장 자격증(Meisterbrief)과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통해서도 갖추어질 수 있다.¹¹⁰⁾ 또한 기업경영상의 환경보호에 대한 실무상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적어도 3년간의 그 부문의 직업상의 경력이 요구된다(독일 환경감사법 제7조제1항제3호). 전문지식은 시험위원회에서의 구두시험 때 확인되어진다(독일 환경감사법 제11조제2항제1문). 시험절차는 연방정부의 법규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다.¹¹¹⁾ 전문지식에 대한 시험은 공인된 과정수수료증으로 대체될 수 있다(독일 환경감사법 제11조제3항과 제13조).

환경감정사의 허가신청 때 당사자는 그 업종분야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제지, 화학, 섬유, 금속세공 등). 왜냐 하면 각 분야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전문지식에 대한 시험은 전문적 지식의 소지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독일 환경감사법 제7조제2항제2d호). 환경감정허가를 원하는 자 또는 조직은 자기들의 환경감정 활동이 독일연방 내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허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독일 환경감사법 제8조). 외국 환경감정사의 독일 국내에서의 활동금지 는 감독관리의

109) Art. 4 Abs. 4 der EG-Öko-Audit-Verordnung.

110) 독일 이외의 다른 회원국들은 대학졸업 보다도 실무경력과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H. Falk, Die EG-Umwelt-Audit-Verordnung: die Zulassung von Umweltgutachtern in sechs Mitgliedstaaten, Manuskript, Sinsheim 1996, S. 11.

111) 환경감정사의 허가절차에 대한 법규(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Zulassung von Umweltgutachtern) vom 18.12.1995, BGBl. I S. 1841.

차원에서 가능하다(독일 환경감사법 제8조제2항).

2) 환경감정사의 임무

기업 내부적 환경감사는 허가받고 독립된 환경감정사에 의한 법적 유효선언에로 이어진다. 환경감정사는 유럽환경감사법 규정에 따라서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와 환경경영감사절차 및 환경공표를 심사하고 유럽환경감사법 부칙 III에 근거하여 법적 유효(Validierung)를 선언한다.¹¹²⁾

(가)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환경감정사는 기업의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이 유럽환경감사법과 일치하는가 그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이 환경법규정에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최초의 환경감사에 대한 심사

환경감사제도의 하나의 요소로서 기업 내부적 환경감사는 환경감사제도에 최초로 참가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차후감사 때에는 환경감사는 환경경영감사에 통합된다. 환경감사는 소재지에서의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사실상의 영향을 검사하는 데에 기여한다. 환경감정사는 그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환경감사의 기술적 적합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불필요한 일의 중복을 피하여야 한다.¹¹³⁾ 환경감정사는 개개 측정의 방법과 절차를 검사하여야 하며 측정기록(Meßprotokolle)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경감정사는 스스로 측정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측정기록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공인되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명문법으로 규정된 측정절차의 정확한 준수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추출시험(Stichprobe)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¹¹⁴⁾ 모든 사실상의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중요한 부문을 간

112) Vgl. Art. 4 Abs. 3, Anhang III Teil B Nr. 1 der EG-Öko-Audit-Verordnung.

113) Vgl. Anhang III Teil B Nr. 1 der EG-Öko-Audit-Verordnung.

114) 임의 추출시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vgl. H. Falk/S. Frey, Die Prüftätigkeit

과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감정사는 작업행위와 담당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통찰하여야 한다.¹¹⁵⁾

(다)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

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법에의 일치와 그 밖의 목표에의 일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상의 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시스템은 환경법과 기타목표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인식,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¹⁶⁾

환경감정사는 환경경영시스템의 기능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환경감정사는 소위 환경편람(Umwelthandbuch)에서 경영시스템의 기록을 통찰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감정사는 담당직원과의 면담과 임의 추출시험을 통하여 서류상의 기록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적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라)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심사

환경감정사는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가 유럽환경감사법 부칙 I과 II에 일치하여 실시되어졌는지를 심사한다.¹¹⁷⁾

(마) 환경공표에 대한 심사

마지막으로 환경감정사는 환경공표의 정확성 여부와 그 공표가 해당 소재지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한다.¹¹⁸⁾

3)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의 결정에 대한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심했던 테마중의 하나였다.¹¹⁹⁾ 독일 환경감사법 제28조에 의하여 연

des Umweltgutachters im Rahmen des EC-Öko-Audit-Systems, UPR 1996, S. 59.

115) Vgl. Anhang III Teil B Nr. 2 der EG-Öko-Audit-Verordnung.

116) Vgl. S. Lütkes, Das Umweltauditgesetz - UAG, NVwZ 1996, S. 234.

117) Vgl. Art. 4 Abs. 5c der EG-Öko-Audit-Verordnung.

118) Vgl. Art. 4 Abs. 5d der EG-Öko-Audit-Verordnung.

방 환경부장관은 법규명령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민법상의 법인에게 환경감정사에 대한 허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독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¹²⁰⁾가 설립되게 되었다. 동회사가 환경감정사의 허가와 감독업무를 행한다. 공무위탁을 통하여 국가는 공무수탁자인 사인의 전문지식, 동기와 기술적, 경영적 설비를 이용하게 된다. 공무수탁자(Beliehene)는 사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기능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된다.¹²¹⁾ 이와 같이 사경제상의 기업으로서의 독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는 독자적인 공권력의 담당자이다. 따라서 독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VwVfG) 제1조제4항상의 관청에 속하며 자기의 권한내에서 행정행위를 발하거나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공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공권력의 위임은 법에 의해서 또는 법률상의 위임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¹²²⁾ 공무수탁자는 자기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로부터의 통제를 받는다. 위탁자의 통제는 허가행위와 감독활동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허가와 자격증의 철회와 감정행위의 금지에도 미친다(독일 환경감사법 제29조). 이와 같이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는 연방 환경부장관의 법적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전문통제¹²³⁾는 받지 않는다.¹²⁴⁾

119) Vgl. Siegfried Waskow, Betriebliches Umweltmanagement - Anforderungen nach der Audit-Verordnung der EG, 1994, S. 69 ff.; siehe auch W. Ewer, Öko-Audit: Der Referentenentwurf für ein Umweltgutachter- und Standortregistrierungsgesetz und die Übergangslösung zur Anwendung der EG-Öko.Audit-Verordnung, NVwZ 1995, S. 458.

120) 그의 독일 명칭은 Deutsche Akkreditierungs- und Zulassungsgesellschaft für Umweltgutachter mbH(DAU)이다

121)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0. Aufl., München 1995, § 23 Rdnr. 56.

122) H. Maurer, a.a.O., § 23 Rdnr. 58.

123) 전문통제는 하위 행정단위(nachgeordnete Verwaltungseinheiten)의 행정활동에 대한 국가적 감독으로서 주로 행정작용(Verwaltungshandeln)의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을 그 대상으로 한다.

124) Vgl. G. Lübke-Wolff, Das Umweltauditgesetz, NuR 1996, S. 220.

4) 환경감정사위원회

환경감정사위원회는 25명의 위원과 그의 대표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제, 자유업, 노동조합과 환경보호단체의 독일 연방상부연합회들과 관할연방과 주의 최고기관들로부터 추천되어 연방 환경부장관으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임명된다(독일 환경감사법 제22조제3항).

환경감정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환경감사법 제4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과 동규정들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과 독일 환경감정 공증과 허가회사를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감독, 환경감정사의 허가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이다(독일 환경감사법 제21조제1항제2문제1호). 이와 같이 환경감정사위원회는 해당 연방부처에 자문하거나 또는 지침의 제정을 제의하지 않고 스스로 지침을 발한다. 동지침은 독일 연방기본법 제86조상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독일 환경감사법 제21조제1항제3문에 근거하여 연방 환경부장관은 동지침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감정사위원회는 허가기관의 시험위원회의 임명에 관한 시험위원의 목록관리, 배석원을 가지는 이의제기위원회의 임명에 대한 추천, 모든 허가사무와 감독사무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과 환경감사법 제13조에 의한 자격증명의 인정심사에의 참여의 임무를 지닌다(독일 환경감사법 제21조제1항제1문제2호 내지 제4호). 독일 환경감사법 제21조제1항제2문과 동법 제13조의 업무상 동 위원회는 3분의 2의 다수결로써 결정한다. 환경감정사위원회의 위원들은 훈령을 받지 않고 활동한다(독일 환경감사법 제22조제1항제2문). 동위원회는 환경부의 법적 통제는 받으나 전문통제는 받지 않는다(독일 환경감사법 제27조). 따라서 법적 통제는 지방자치법상의 법적 통제나 수공업회의소에 대한 법적 통제와 유사하다(독일 연방수공업법 제105조, 제115조).

5) 소재지등록

참가공표의 사용권능은 해당명부에의 소재지의 사전등록을 전제로 한다. 소재지등록은 등록기관에 공증된 환경공표를 제출하고, 등록 수수료

를 지불함으로써 된다.

(가) 등록기관

유럽환경감사법 제18조제1항은 모든 회원국들은 동법의 효력발생 후 12개월 이내에 소재지 등록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유럽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입법자는 독일 환경감사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감사된 소재지의 등록을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에 위임하였다.¹²⁵⁾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는 문서상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등록기관을 지정한다(독일 환경감사법 제32조제2항). 예를 들면 바이에른주는 뮌헨 상공회의소를 그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등록기관은 그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관할 감독청의 감독을 받는다. 그 감독관청으로는 대개 주경제부가 그에 해당된다. 감독조치는 물론 주환경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독일 환경감사법 제32조제1항제2문).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는 독일 환경감사법 제32조제1항제1문에 언급된 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자기 둘 중 한 단체가 위임받는다든 것을 문서상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동 임무위임은 관할권있는 환경관청의 동의하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나) 등록절차

해당 기업은 유효성이 인정된 환경공표를 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당해 기업의 소재지가 유럽환경감사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확신하는 한 당해 소재지를 소재지장부에 등록한다(유럽환경감사법 제8조와 제9조, 독일 환경감사법 제33조). 이와 관련하여 등록기관은 해당 영업부문에 대해 환경감정사가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록될 소재지와 감사된 소재지가 상호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125) 이에 반하여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덴마크는 공법상의 경제 자치행정단체(öffentlich-rechtlich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der Wirtschaft)에 위임하지 않고 국가행정기관(Behörde der Staatsverwaltung)에 직접 위임하였다. vgl. H. Falk, a.a.O., S. 4.

6) 참가공표

소재지등록은 기업에게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를 증명하는 참가공표, 소위 환경감사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감사의 인증마크를 상품광고와 상품의 포장에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둘 다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제 4 절 미국

1. 의 의

미국에서 환경감사는 영어로 environmental audit, environmental assessment, environmental due diligence 등으로 불리어진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며, 여러 사안에서 이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등에서는 자기 회사의 환경법에 대한 준수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환경감사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슈퍼 펀드법상의 정화과정은 예비조사(PA)로부터 항구조치실시 계획(RD)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기업조사단계가 있다. 그 경우 여러 곳에서 조사가 실시되며, 이는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내용적으로 사전적인 기업의 내부감사와는 상당히 취지를 달리한 것이지만, 문언상으로는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환경감사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로 시설의 매매에 앞서서 슈퍼 펀드법상의 정화책임¹²⁶⁾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환경감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2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명용,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선방안, 연구보고(2001-7), 한국법제연구원, 2001, 81면 이하 참조.

2. 환경감사의 도입배경

미국에서는 슈퍼 펀드법(Superfund)상 투자 또는 매매 등에 앞서서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슈퍼 펀드법에 의하면 오염시설의 현재의 소유자·관리자는 책임당사자로서 정화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동산 등의 취득(M&A를 포함한다)시에는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소유자의 행위로 인하여 오염된 토지나 지하수의 정화비용을 현재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도 예상의외 정화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자 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전에 어떠한 조사를 용자 전에 실시하게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스스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¹²⁷⁾

(1) 매수인의 입장

매수를 하는 경우 오염시설의 매입을 회피하거나 오염이 발견된 경우에 가격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환경감사는 필수적이다. 환경감사를 실시함으로써 ①오염이 정화책임문제로의 발전할 가능성의 정도, ②오염규모의 정도, ③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가, ④정화비용의 예상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된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계약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계약 전에 상대방에게 정화를 실시하게 하든지 혹은 정화비용을 제외한 매매가격을 설정하든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¹²⁸⁾

(2) 매도인의 입장

유해물질이 방출된 시점에서의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책임을 지게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소유자는 알고 있어도, 어느 시점에

127) 한 철, 임의적 환경감사의 법리, 경영법률(한국경영법률학회), 1999, 575면;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環境リスクと環境法(米國編), 1995, 204頁.

128)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前掲書, 204~205頁.

서 유해물질이 방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즉 과거의 소유자는 전체 책임당사자로서 책임을 떠 맡게될 위험을 지게된다. 그러한 매도에 있어서 매매계약체결 전에 매매목적물이 양도의 시점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거가 첨부된 문서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장래 그 시설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로서 커다란 가치가 있다. 또한 장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예방적 이유뿐만 아니라 환경감사의 실시에 의하여 오염의 유무가 명백하게 되며, 오염이 없는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설령 오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구분하는 등 명확하게 대처하여 매매 교섭력을 높인다는 적극적인 장점도 있다.¹²⁹⁾

(3) 기업매수의 경우

기업매수와 수반하여 슈퍼 펀드법상의 책임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위험은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기업매수의 경우 교섭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밀리에 교섭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매수대상기업의 시설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은 환경감사의 실시를 곤란하게 하는 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매수 후 거액의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예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감사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¹³⁰⁾

3. 전문가의 활용 및 선출방법

환경오염은 복잡한 요인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 지식·경험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재무 분야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 요구된다. 기업내의 인적 자원의 활용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29)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前掲書, 205頁

130)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前掲書, 205~206頁.

그러나 환경감사전문기업이 아닌 경우, 경험도 적고 전문가도 없는 경우 및 감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 있어서 장점은 데이터의 중립성 및 신뢰성이 증가하며, 당사자간의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기업매수의 경우 등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복수의 시설의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효과도 그렇긴 하나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환경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전문가의 선정은 ①지식 및 기술의 전문성, ②업무경험의 유무, ③신속한 대응력, ④관련 서비스 제공능력의 유무, ⑤이익상반관련의 유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¹³¹⁾

4. 환경감사의 과정

실제로 개개의 감사의 범위는 시간적·재정적 제약 하에서 목적에 따라서 사안별로 결정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제1단계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의 조사내용, 정도 등도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제1단계 - 현장 방문 전 공개정보의 수집

대상기업의 조직, 사업내용, 환경법규의 준수상황 등 가능한 공개정보를 수집하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장방문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¹³²⁾

- 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되어 있는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회사안내서 등
- ② 슈퍼 펀드법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CERCLIS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시설의 신고, 각 장소별 책임당사자의 목록

131)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前掲書, 206頁.

132)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前掲書, 207頁.

록(열람가능). 현재 3만 3000개소 이상이 신고되어 있으며, 매년 약 2000건씩 증가하고 있다.

- ③ 긴급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유해물 질배출에 관한 정보
- ④ RCRA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유해물 폐기행위의 통지
- ⑤ EPA가 공표하고 있는 연방수질오염방지법과 대기정화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종합한 보고서
- ⑥ 토지의 과거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주, 카운티, 시 등이 보존하고 있는 열람 가능한 공적 기록

(2) 제2단계 - 현장조사

제1단계의 조사가 종료된 후 오염의 의혹이 있으면 현장에서의 조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①현장에서의 면담을 통한 상황파악, ②과거의 환경관계기록의 열람, ③환경법규의 준수상황의 조사, ④실제의 현장시찰, ⑤규제당국과의 접촉 등이 행하여진다.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구체적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이전의 소유자의 시기도 포함하여 그 장소에서 실제로 행하여졌던 업무내용-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원재료 등의 사용의 유무, 그 위에 특히 환경관계의 각종 허가조건 등을 조사한다.
- ② 폐기물의 처분방법-이전의 소유자의 시기를 포함하여 현장에서의 처분방법, 외부에서의 처분방법 등의 조사. 대기, 토양, 지표수, 지하수 등 모든 매체로의 폐기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지하저장탱크(UST)에 대한 상세한 조사.
- ④ 현장에서의 모든 누출과 그의 정화에 관한 조사.
- ⑤ 주변주민, 당국 등으로부터 소송의 유무에 대한 조사.
- ⑥ 건물자체에 석면(asbestos)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 ⑦ 종업원의 건강안전에 관한 기록.

현장방문은 1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어떤 회에는 계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처음의 회는 환경전문가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이 요구된

다. 양자가 공통인식을 가지고 보통 피드백(feed back)하면서 그 결과를 조사내용에 반영시켜서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자 사이의 협의를 하여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¹³³⁾

(3) 제3단계 - 토양, 물, 대기의 표본추출(sampling),
그 밖의 철저한 조사

감사의 결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지적된 경우, 물건매매거래의 계속의 가부를 포함한 방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진의 방향이라면 표본추출조사를 포함하여 목적에 부응한 철저한 조사를 한다. 표본추출조사의 결과를 후일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이 필수요건으로 된다.

- ① 표본추출장소를 나타내는 현장도면
- ② 표본추출방법
- ③ 표본분석방법
- ④ 분석을 담당한 연구소 또는 시험소
- ⑤ 분석품질방법 및 보증수단

어떻든 의에서 언급한 것은 하나의 표준적인 예이지만 종류별로 다양성이 있는 것은 누차 기술한 바와 같다.¹³⁴⁾

5. 환경경영원칙에 관한 법

(1) 법의 목적

1996년 연방환경청(EPA)은 알권리 법(Right-To-Know Law)과 오염방지요건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원칙법(Cod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Principles)¹³⁵⁾을 제정하였다.¹³⁶⁾ 이 법은 연방기관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두

133)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前掲書, 208頁.

134)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前掲書, 208~209頁.

135) See 61 Fed. Reg. 54062 (Oct. 1996).

136) See Executive Order 12856 (Aug. 3, 1993).

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연방정부가 공동의 환경윤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연방정부의 많은 기관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 공공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클린턴은 연방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르도록 지시하였다.¹³⁷⁾

-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환경경영프로그램의 상황을 강조하는 원칙법에 일치
- 연방환경청은 모델장치와 같은 연방시설을 인증하는 자격을 가지며
- 환경실무에 있어서 현저한 주도력을 보이도록 연방공무원을 촉진하도록.

(2) 원칙법

이 법은 경영프로그램과 목표에 구현되기를 기대하였던 5가지의 일반적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비록 그 이행이 다양한 기관의 기능과 함께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있어서 밝혀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련되는 모든 이러한 목표들은 경영정책에 개괄적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 목표는 오염을 경감하는데 있어 경영목표의 중요한 부분이며, 모든 연방기관이 “클리너(Cleaner)”한 법을 제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 원칙들은 연방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연방기관의 최고관리조직에 의한 오염방지정책의 채택 및 발전
- 문제지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오염방지측정을 착수하는 사전적 프로그램의 이행
- 직원들이 환경정책을 고려한 방법으로 그의 직업을 수행
- 직원들의 환경적 업적을 평가하고 직원들은 환경적 의무의 면제에 대하여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령
- 환경적 목표로 향한 그들의 발달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업적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들의 사용. 이러한 것은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평가하는 기관에 의한 벤치마크를 포함한다.

137) Executive Order 12856, § 4-405.

(3) 자기정책에 대한 동기부여

연방환경청의 집행프로그램은 환경기준 또는 허가를 위반하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집행을 두려워하여 많은 기업들은 연방환경청 또는 주의 규제기관보다도 위반행위를 덜 발견한다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여 허용되는 환경감사에서의 새로운 기업경영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능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방환경청은 포괄적인 복종과 집행노력과 가끔 직면하게 되는 재정적·행정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연방환경청은 많은 규제의 보고와 감시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책에도 똑같이 기업들을 경감시켜주게 되었다. 1996년 연방환경청은 환경침해를 자발적으로 발견, 수정, 공표하도록 하는 통제된 실체를 권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의 결과가 되는 위반 또는 반복된 위반자는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되었다.¹³⁸⁾ 연방환경청은 조사 전에 환경감사에서 자발적으로 발견된 위반이 이미 관리되고 있으므로 통제된 실체를 결코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정책이다.¹³⁹⁾

또한 연방환경청은 값비싸고 강제적인 환경감사에 대한 일상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삼가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은 1986년 이후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써 정책이 재확인되었다.¹⁴⁰⁾

(4) 일반국민의 집행에 기초한 허가(Public Performance
-Based Permitting)

연방환경청은 일반국민의 집행에 기초한 허가의 개념을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허가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환경집행의 규정된 기준의 확립을 요구하고, 허가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¹⁴¹⁾ 집행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고안하기 위하

138) P. Weinberg/K. A. Reilly, *Understanding Environmental Law*, Matthew Bender, New York, 1998, p. 460.

139) 60 Fed. Reg. 66706 (Dec. 1995).

140) P. Weinberg/K. A. Reilly, *op. cit.*, at 460.

141) 61 Fed. Reg. 41252(Aug. 1996).

여 허가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한편 규제초점은 측정의 이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대한 가능한 정도까지 일반국민은 이행기준의 설정과 평가에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접근이 다양한 상황에 사용된 이래 연방환경청은 기술에 기초를 둔 허가에 대한 완전한 교체로서 집행에 기초한 허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자원회복법(RCRA) 하에 상세한 기술적 심사가 대부분의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의 토지이용에 대하여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탱크와 컨테이너 저장활동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¹⁴²⁾

이렇게 하여 연방환경청은 사용자에게 보다 친근하고 시설에 대하여 혁신적이고, 일반공공에게 좀더 공개적인 허가제도의 구성에 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많은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공공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연방환경청은 20년 전에 허가가 허용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그 여부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하지만 현대에는 기술적 추종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복잡성과 증가하는 공동책임의식이 추종을 입증하기 위하여 연방환경청에 의하여 허가에 부과된 기술적 조건을 떠나서 변환을 보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환경성과, 즉 물, 대기 및 토양자원의 조건은 환경집행의 척도에 대한 최종적인 기준이다. 현재의 허가시스템은 주로 정보조종이지만, 정보는 허가의 추종을 묘사하나, 환경영향을 묘사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연방환경청은 전국적인 덜 균일화하고 지역적 조건과 집행에 더 맞추고 불필요한 새로운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주의 허가기관과의 관계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주와의 새로운 관계의 부분으로서 연방환경청은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 유용하게 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허가기관은 일반공공에게 그들 자체의 집행에 대하여 좀더 책임져야 할 것이다.¹⁴³⁾

142) 61 Fed. Reg. 41252, 41259 (Aug. 1996).

143) P. Weinberg/K. A. Reilly, op. cit., at 461.

6. 환경감사특권법

(1) 입법상황

미국에서는 1997년 1월 현재 20개 주가 환경감사에 대하여 특권 및 면책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 중에 적어도 24개 이상의 주가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여 제안하였다. 1993년 오리건주가 최초의 임의적 환경감사법¹⁴⁴⁾을 제정하여 임의적으로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법상의 소송절차에서 실정법상의 특권을 부여한다.¹⁴⁵⁾ 이 법은 환경감사자가 특권에 의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을 심사하기 위한 민·형사상 및 행정법상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비공개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특권을 포기하거나, 특권을 사기의 목적으로 주장하거나, 실정법을 준수하지 못한 임의적 감사자를 보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¹⁴⁶⁾

콜로라도주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경우 민·형사 및 행정법적 벌칙으로부터의 면책과 증거법상의 특권을 허용하는 5개년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¹⁴⁷⁾

1995년에는 7개 주가 특권 및 면책법안을 통과시켰고, 2개 주는 특권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26개 주가 유사한 법안을 제안하였으나 부결되었다. 1996년에는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4개의 주가 특권 및 면책법을 마련하였으며, 뉴저지 등의 3개 주는 면책법만 마련하였다.¹⁴⁸⁾

144) Or. Rev. Stat. S 468.963(1995).

145) Id. SS 468.963(3)(a), (3)(c).

146) Id. SS 468,963(3)(b)(A),(C), 468.963 (3)(c)(A),(C); 한 철, 전계논문, 586면.

147) Colo. Rev. Stat. Ann. SS 13-25-126.5, 25-1-114.5(4) (West 1997).

148) Mich. Comp. Laws Ann. SS 324.14801 to 324.14809 (West 1997); 1996 N.H. Laws 147-E; Ohio Rev. Code Ann. SS 3745.70 to 3745.73 (Banks-Baldwin 1997); 1996 S.C. Acts 384; N.J. Stat. Ann. S 13: ID-125 (West 1997); S.D. Codified Laws SS 1-40-33 to 1-40-34 (Michie 1996); Utah Code Ann. S 19-7-109(1996); 한 철, 전계논문, 586면.

(2) 법의 주요내용

1) 특권조항

환경감사특권법은 임의적 환경감사의 실시 중에 작성된 기록들의 공개 절차를 막고 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기간동안 계속되는 임의적 평가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특권의 적용이 곤란할 수도 있다.¹⁴⁹⁾ 환경감사과정의 기간은 특정된 개시일자와 예정된 종료일자를 가진 별도의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감사의 과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와이오밍주는 환경감사가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⁵⁰⁾

대부분의 주는 주법 또는 연방법이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기록, 사기의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모든 보고서 또는 실정법을 신속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작성된 모든 보고서에 대해서는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¹⁵¹⁾ 그 밖의 몇 개 주는 공중의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긴급하고 중대한 침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¹⁵²⁾ 미네소타주는 기업이 환경감사유도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경우 오염규제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제3자 특권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특권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¹⁵³⁾

특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스스로 입증책임을 지며, 문제된 자료에 특권을 인정할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소송에서는 비공개심리를 원칙으로 한다.¹⁵⁴⁾ 미시간주는 사기의 목적으

149) 1996 N.H. Laws 147-E:1; Utah Code Ann. S. 19-7-103(1996).

150) Wyo. Stat. Ann. S 35-11-1105 (Michie 1996).

151) 예를 들어 Ark. Code Ann. SS 8-1-305, 8-1-307(Michie 1995); 한 철, 전개논문, 587면.

152) 1996 N.H. Law 147-E:4; Va. Code Ann. S 10.1-1198 (Michie 1996); Wyo. Stat. Ann. S 35-11-1105(c)(ii)(D) (Michie 1996).

153) Minn. Stat. Ann. S 114C.26 (West 1997).

154) Col. Rev. Stat. Ann. S 13-25-126.5 (West 1997); Kan. Stat. Ann. SS 60-3334, 60-3335 (1995).

로 임의적 감사특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¹⁵⁵⁾ 대부분의 법률은 부당한 특권 주장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¹⁵⁶⁾ 콜로라도주, 유타주 및 텍사스주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특권이 인정된 문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관계당사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¹⁵⁷⁾

2) 면책조항

아이다호주와 콜로라도주는 기업이 자기가 행한 위법행위를 임의적으로 공시하고 신속하게 교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¹⁵⁸⁾ 미시간주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¹⁵⁹⁾ 사우스다코타주는 위법행위가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⁶⁰⁾ 캔자스주, 미시시피주 및 그 밖의 주들은 기업이 임의적 환경감사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벌칙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¹⁶¹⁾

몇 개의 주는 임의적으로 환경법의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시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¹⁶²⁾ 뉴저지주는 기업이 행정상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경미한 환경법의 위반행위를 시정할

155) Mich. Comp. Laws Ann. S 324.14807 (West 1997).

156) 한 철, 전계논문, 588면.

157) Col. Rev. Stat. Ann. S 13-25-126.5 (West 1997); Tex. Rev. Civ. Stat. Ann. art. 4447cc(6)(d) (West 1997); Utah Code Ann. S 19-7-104 (1996); Miss. Code Ann. S 49-2-71(3)(b) (1996).

158) Col. Rev. Stat. Ann. S 21-1-114.5 (West 1997); Idaho Code S 9-809(1) (1996).

159) Mich. Comp. Laws Ann. S 324.14809(1) (West 1997).

160) S.D. Codified Laws S 1-40-34 (1996).

161) Kan. Stat. Ann. S 60-3339 (1995); Miss. Code Ann. S 17-17-29(7)(g) (1996); 한 철, 전계논문, 588면.

162) 예를 들면 Ky. Rev. Stat. Ann. S 224.01-040(10) (Banks-Baldwin 1997).

수 있는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¹⁶³⁾ 대부분의 주는 위법행위가 환경 또는 공중의 보건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¹⁶⁴⁾ 그 밖의 주는 공시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민사 또는 행정벌칙으로부터의 포괄적인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¹⁶⁵⁾

미네소타주는 5개년 환경감사 유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임의적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제기관에 대하여 확인된 환경법의 위반사항과 구제조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네소타주는 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져서 인간의 보건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지 않거나, 그 위법행위가 바로 앞의 해에 발생한 행위의 반복이 아닌 한 기업이 9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이 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선의로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벌칙의 경감을 받는다. 오염규제기관의 장에 의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설비에 그린스타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일반 공중에 대하여 그 기업의 환경보호약속을 공표할 수 있다.¹⁶⁶⁾

제 5 절 비교법적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각국의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OECD는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목표의 달성과 개방적 다각무역의 유지와 적절한 균형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국가간의 환경요건의 차이가 새로운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

163) N.J. Stat. Ann. S 13:ID-125 (West 1997).

164) 예를 들면 1996 N.H. Laws S 147-E:9.

165) 예를 들면 Ohio Rev. Code Ann. S 3745.72(A) (Banks-Baldwin 1997); 한 철, 전계논문, 589면.

166) 한 철, 전계논문, 589면.

다는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별 환경관련규격의 조화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는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표준화작업을 담당할 기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TC 207의 표준화작업은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그 주제에는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 환경마크, 환경성과평가,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등이 포함되어 있다. ISO가 추진하는 환경경영분야의 국제표준규격은 각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권고사항으로 국가차원에서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ISO는 14000시리즈를 제정하게 되었다. ISO 14000시리즈는 국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한 산업계헌장』, EU계획: EMAS=환경경영감사계획), BSI(영국규격협회)의 규격: BS 7750의 영향을 받아 발행되고 있다. ISO 14000시리즈는 국제적 환경자율규제이며, 기업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채용이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1. E U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EU도 환경감사제도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1993년 6월 29일에 환경경영과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유럽연합제도에의 기업들의 자발적 참가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유럽연합조약(EGV) 제130조제2항),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상 전환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감정사의 허가와 그의 활동에 대한 감독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2. 독 일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 유럽환경경영감사와 환경감사에 대한 법의 국내법으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감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기업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환경감사에 참가하는 기업에 친 환경적 경영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경영상의 환경보호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자발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하나 또는 여러 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감사제도의 내부적 수단으로서 먼저 기업의 최고경영차원에서의 환경정책의 확립, 자체적인 최초의 환경감사,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감사 및 환경공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감사가 이루어지면, 외부의 환경감정사에 의한 기업 외부적 환경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은 환경감정사의 허가, 환경감정사의 임무,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 환경감정사위원회, 소재지등록, 등록기관 및 참가공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미 국

미국에서는 슈퍼 펀드법(Superfund)상 투자 또는 매매 등에 앞서서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슈퍼 펀드법에 의하면 오염시설의 현재의 소유자·관리자는 책임당사자로서 정화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동산 등의 취득(M&A를 포함한다)시에는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소유자의 행위로 인하여 오염된 토지나 지하수의 정화비용을 현재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도 예상외의 정화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자 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전에 어떠한 조사를 용자 전에 실시하게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스스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1996년 연방환경청(EPA)은 알권리 법(Right-To-Know Law)과 오염방지요건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원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연방기관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연방정부가 공동의 환경윤리에 전념하

여야 하며, 연방정부의 많은 기관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 공공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은 경영프로그램과 목표에 구현되기를 기대하였던 5가지의 일반적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비록 그 이행이 다양한 기관의 기능과 함께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있어서 밝혀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련되는 모든 이러한 목표들은 경영정책에 개괄적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 목표는 오염을 경감하는데 있어 경영목표의 중요한 부분이며, 모든 연방기관이 “클리너(Cleaner)”한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연방환경청의 집행프로그램은 환경기준 또는 허가를 위반하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집행을 두려워하여 많은 기업들은 연방환경청 또는 주의 규제기관보다도 위반행위를 덜 발견한다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여 허용되는 환경감사에서 새로운 기업경영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능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방환경청은 포괄적인 복종과 집행노력과 가끔 직면하게 되는 재정적·행정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연방환경청은 많은 규제의 보고와 감시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책에도 똑같이 기업들을 경감시켜주게 되었다. 1996년 연방환경청은 환경침해를 자발적으로 발견, 수정, 공표하도록 하는 통제된 실체를 권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연방환경청은 일반국민의 집행에 기초한 허가의 개념을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허가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환경집행의 규정된 기준의 확립을 요구하고, 허가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집행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고안하기 위하여 허가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한편 규제초점은 측정의 이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97년 1월 현재 20개 주가 환경감사에 대하여 특권 및 면책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 중에 적어도 24개 이상의 주가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여 제안하였다. 1993년 오리건주가 최초의 임의적 환경감사법을 제정하여 임의적으로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법상의 소송절차에서 실정법상의

특권을 부여한다. 이 법은 환경감사자가 특권에 의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을 심사하기 위한 민·형사상 및 행정법상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비공개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특권을 포기하거나, 특권을 사기의 목적으로 주장하거나, 실정법을 준수하지 못한 임의적 감사자를 보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경우 민·형사 및 행정법적 벌칙으로부터의 면책과 증거법상의 특권을 허용하는 5개년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995년에는 7개 주가 특권 및 면책법안을 통과시켰고, 2개 주는 특권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26개 주가 유사한 법안을 제안하였으나 부결되었다. 1996년에는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4개의 주가 특권 및 면책법을 마련하였으며, 뉴저지 등의 3개 주는 면책법만 마련하였다.

환경감사특권법은 임의적 환경감사의 실시 중에 작성된 기록들의 공개 절차를 막고 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기간동안 계속되는 임의적 평가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특권의 적용이 곤란할 수도 있다. 환경감사과정의 기간은 특정된 개시일자와 예정된 종료일자를 가진 별도의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의 장려와 환경감사에 대하여 정책상 또는 입법상 방안을 강구하여 국제표준규격이 정하고 있는 ISO 14000시리즈를 국내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을 구축함과 아울러 법적 체계를 정비해가고 있다.

즉 기업활동에 있어서 친환경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과 환경경영에 대한 자체적 책임 하에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감사에 대하여 외부감정사들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하여 그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를 등록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국가의 법제 중에서도 특히 유럽의 환경감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의 환경감사법이 체계적으로 잘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동법의 목적은 기업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환경감사에 참가하는 기업에 친환경적 경영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경영상의 환경보호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자발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하나 또는 여러 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감사제도의 내부적 수단으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층차원에서의 환경정책의 확립, 자체적인 최초의 환경감사,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감사 및 환경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감사가 이루어지면, 외부의 환경감정사에 의한 기업 외부적 환경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의 환경감정사의 허가, 환경감정사의 임무,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 환경감정사 위원회, 소재지등록, 등록기관 및 참가공표는 제4장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우리 나라에서의 환경감사법의 제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우리 나라의 관련법규들은 서로 상호간에 중복되는 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법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간의 다툼의 여지를 안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를 각각 개별법률(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개별환경법령) 및 고시에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민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과 같이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를 단일법에 규정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아울러 그에 대한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제 3 장 환경감사법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제 4 장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제 1 절 입법방식 및 제정목적

1. 입법방식

현재 우리 나라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과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 표준시리즈)과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중인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설비자금 등의 지원, 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은 각각 개별법의 차원에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친화기업의 인증 및 지정에 관하여 개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그를 위한 기준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관한 전담부처는 환경부이므로 환경경영체제 인증 및 인증심사원의 양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환경부

장관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선진국가, 즉 독일, 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는 연방환경부, 미국의 경우는 연방환경청이 환경경영체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환경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관할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중 환경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에 필요한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환경감사법의 일부내용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환경기술의 개발과 설비 등에 대한 인증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켜 법체계의 일관성 및 주무부처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과 그 관리·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입법방식에 있어서 현행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별환경법의 일부내용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이 환경경영촉진및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을 그 전제로 한다. 다만 입법모델은 유럽환경감사법과 독일의 환경감사법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는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장려차원의 원칙법과 그의 특권 및 면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입법정책상 그리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입법목적

이 법률은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환경경영의 확립과 전환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 외에 기업경영상 적절하고 지속적인 환경보호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자기의무에 근거하여 경영상 성장은 가능한 한 환경을 보호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다. 또한 기업은 자기들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자체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은 자기의 활동상 환경에 중요한 측면에 대한 일반

공공의 관심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¹⁶⁷⁾

기업은 그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의 증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이 친환경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¹⁶⁸⁾

참고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을 살펴보면, 환경친화기업은 최고경영진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경영촉진및환경경영감사에관한법률은 적어도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환경경영의 확립과 전환에 그 목표를 두고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환경경영촉진및환경경영감사에관한법률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과 환경경영감사에 관련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서 환경경영촉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법률에 통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환경경영의 촉진과 환경경영감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실시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경영촉진과 환경경영감사는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사이에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167) 유럽환경감사법 전문 참조(Präambel der EG-Öko-Audit-Verordnung).

16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참조.

다만 우리 나라의 인증체제에 대하여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환경경영체제와 그의 인증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보고서상의 환경감사법은 국가표준기본법과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개별환경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통합되어 운영·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환경법의 영역에 있어서 ISO 규격에 따라 환경친화적 각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개별법령들도 원칙적으로 이 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이 요구된다.

이한 취지에서 볼 때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환경경영촉진및 환경경영감사에관한법률은 기업의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법은 환경경영의 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 2 절 적용범위

환경경영체제의 확립과 환경감사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가? 이는 그 동안 환경경영체제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국내기업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 기업을 포함할 것인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경영”이라 함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개념은 중소기업, 대기업,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생산, 판매, 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행하는 조직체¹⁶⁹⁾를

16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업에는 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제3조제1항).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사업장내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제3조제2항). 그리고 단위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단위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제3조제3항).

유럽환경감사법은 기업이라는 개념을 일정한 소재지에서 그의 영업활동에 대한 경영감사를 행하는 모든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⁷⁰⁾ 여기에는 모든 생산공장과 가공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기발전, 가스생산, 열발생과 재활용, 폐기물관리를 하는 기업이 포함된다.¹⁷¹⁾

그리고 환경감사절차와 환경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의 기업이나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기업이 하나 또는 여러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단위, 즉 구체적인 소재지이다. 구체적 소재지는 일정한 소재지에서 기업의 통제하에 영업활동이 되고 있는 지대이다.¹⁷²⁾ 이러한 입법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이 법률에서 그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기업은 일정한 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환경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조직일 것이다.

170) 제2조 참조.

171) 제2조 및 제3조 참조.

172) 유럽환경감사법 제2k조 참조.

제 3 절 환경경영체제 및 환경감사를 위한 기업 내부적 수단

1. 환경정책의 수립과 확립

환경경영체제의 확립을 통한 환경감사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환경정책은 환경경영체제와 환경감사제도의 기본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전체목표와 활동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은 기업경영차원에서 일정한 환경정책을 명문으로 규정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에는 또한 기업의 환경관련법의 준수도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업의 활동이 환경매체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부문, 원료와 폐기물부문, 소음방지, 생산계획, 수송과 공급관계, 사고에 대한 사전배려 등일 것이다.¹⁷³⁾ 이러한 환경정책의 목표는 기업이 경제적으로 수인가능하고 운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의 투입을 통하여 도달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환경침해를 줄이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환경정책은 환경관련법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상 환경보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상의 환경개선 계획서는 기업의 환경정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환경개선 계획서는 ①사업활동의 개요, ②환경관리 일반현황, ③사업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④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현황, ⑤환경개선계획, ⑥기타(신청기업에서 환경개선계획 이행시 심사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관리 일반현황에는 ①경영층의 환경경영 의지, ②환경관리체계 구축현황, ③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현황, ④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현황, ⑤환경보전 관련활동 및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현황, ⑥환경관련 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민원 발생현황이 속한다.

173)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1 C 참조.

사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①공정흐름도 및 원·부재료 사용 원단위 분석(제조업에 한함), ②투입·배출물질(원료, 용수, 연료사용량 등)에 의한 물질수지표(제조업에 한하며, 단위공정별 물질수지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 물질수지표와 주요공정별 물질수지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분석(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분석), ④주변 환경질과 사업장 배출오염도 비교 및 국내·외 유사업종과의 환경성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현황은 ①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 개발·적용,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보고서 및 환경회계 도입 등 환경경영 현황 및 성과, ②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현황 및 분야별(대기, 수질, 폐기물)오염물질 배출 관리 및 개선현황, ③유독물의 제조·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 ④기타분야 환경관리 및 개선현황(소음·진동, 악취, 토양, 지하수, 위탁처리 관리, 환경보전활동 및 국제환경협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다.

환경개선계획은 ①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 개발·적용,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보고서 및 환경회계 도입 등 환경경영 개선계획, ②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 및 분야별(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③유독물의 제조·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④기타분야 환경개선계획(소음·진동, 악취, 토양, 지하수, 위탁처리 관리, 환경보전활동 및 국제환경협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개선 계획은 기업의 환경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기업의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최초의 환경감사의 실시

기업이 소재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 환경영향과 경영상의 환경보호에 대하여 제1차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실시되어야 한다.¹⁷⁴⁾ 이러한 환경감사의 결과는

174) 유럽환경감사법 제2b조 참조.

기업이 규정하고자 하는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토대가 된다. 환경감사의 기능은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감사와 적응에 대한 기초가 되는 환경경영감사의 기능과 유사하다.

환경감사는 광범위하게 평가된 현안조사로서 종결되는데 현안조사에는 특히 환경상황과 환경법의 상황을 내포하는 경영상의 환경장부의 작성이 속한다. 환경상황은 특히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즉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폐수의 하천유입, 폐기물에 대한 보고, 토양오염, 물-, 에너지-, 원료소비 및 열과 소음의 방출을 의미한다.

3.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의 설정

기업은 환경감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소재지에 대한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한다.¹⁷⁵⁾ 환경목표는 기업이 경영상의 환경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목표이며, 기업의 환경정책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경목표는 환경영향의 발생방지, 감소, 제거를 위한 기업 내부적 지침이다.

환경프로그램은 일정한 소재지의 환경보호를 보증해야 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 및 동목표의 실현에 투입되었고 투입될 수 있는 조치들과 이 조치의 실현에 확정된 기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환경보호의 목표는 기업이 자기의 경영상 환경보호를 위해 설정한 것을 의미한다. 환경프로그램은 또한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포함한다. 새로운 또는 변경된 생산품, 즉 생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환경프로그램들이 설정될 수 있다.¹⁷⁶⁾

환경프로그램은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의 이행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프로그램도 유동적인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175) 유럽환경감사법 제3c조제1항제1문 참조.

176)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A I 참조.

4.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확립

환경경영시스템은 전체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에 해당되며, 환경정책의 실현과 확립을 위한 조직구조, 행위방식, 담당부서, 형식적 절차, 수단과 과정을 포함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은 한편으로는 환경보호를 보증하는 경영조직의 수단적 전제조건을 설정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은 해당 소재지에서의 기업활동의 환경영향에 대한 감사에 대한 구체적 필요조건을 정한다.

예를 들면 유럽 환경감사법 제3c조에 의하면 기업은 환경감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한 소재지의 모든 활동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조직상의 전제조건 이외에도 환경경영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활동상의 환경영향을 심사, 평가와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

5.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환경프로그램이 설정되었고 환경경영시스템이 확립된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에 대한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¹⁷⁷⁾ 환경경영감사는 소재지와 관련된 기업내부의 경영감사를 의미한다.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는 환경감사제도의 핵심부분에 속한다. 환경경영감사는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조직, 경영과 과정의 성과에 대한 시스템적, 정규적, 객관적 그리고 문서화된 평가를 포함하며, 둘째, 환경과 관련된 행위방식에 대한 경영감독의 용이화와 환경보호영역에서의 기업정책의 정확한 평가에 기여해야 하는 경영수단이다.¹⁷⁸⁾ 따라서 환경경영감사는 기업내부의 경영감사자 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외부인 및 조직들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감사관련법제에서는 기업내부의 자체적인 환경경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177) 유럽환경감사법 제3d조 참조.

178) 유럽환경감사법 제2f조 참조.

환경경영감사는 감사범위의 확정으로써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자는 특히 현재 유효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활동은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토론, 소재지의 환경보호의 질의 평가와 관련하여 서류와 서면상의 절차의 감사를 포함한다.

환경경영감사의 목표는 특히 현존하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환경경영시스템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법규범에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경영시스템이 소재지의 환경관련 과제의 성취에 유효하고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¹⁷⁹⁾

환경경영감사의 실행절차는 유럽환경감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소재지가 법률상 그리고 기업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프로그램이 실현되고, 경영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국제품준협회 ISO 10011과 기타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 감사되고, 시스템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경영감사의 확증과 결과에 대한 명백한 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 후에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¹⁸⁰⁾

동 보고서는 현실상황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환경감사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환경경영감사 때에 파악된 감사범위를 문서화하고,

둘째, 기업의 환경정책과 경영상의 현실과의 일치정도와 소재지에서의 환경과 관련된 발달에 관한 정보를 기업경영층에 제공하고,

셋째, 소재지에 대한 생태학적 영향의 감시를 위한 규정들의 유효성과 신뢰성의 상황에 대하여 기업경영층에 보고하고,

넷째, 요구되는 시정조치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데에 있다.¹⁸¹⁾

6. 감사보고서에 의한 환경공표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의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성과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가지표, 환경경영성과

179)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II E 참조.

180)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II F 1 제1항 참조.

181)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II F 2 참조.

계량화사업이 있는데,¹⁸²⁾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을 하고 이를 일반국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 수요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감사보고서와 다소 유사하다.

최근 선진 외국기업 및 투자기관의 기업환경성과 자료요구의 증가로 환경정보공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수의 대기업만이 자체적으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환경정보공개를 위해서는 환경보고서의 작성·공개 표준화와 인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2000년도에 마련한 기업 환경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현장 적용하기 위한 “기업환경보고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업환경보고서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정보공개의 제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환경보고서 시범사업은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환경경영성과 및 환경개선노력 등의 환경정보를 금융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경영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보고서가 단순히 작성되어서는 의미가 없고 환경경영감사와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작성되고 그 인증을 받을 때만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 후에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모든 기업소재지는 최초의 환경감사와 후속되는 모든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후에 환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인에게 경영상의 환경보호 상황을 일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환경보고서는 특히 아래의 5가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 해당 소재지에서의 기업의 활동에 대한 보고,
- (2)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
- (3) 유해물질배출, 폐기물 발생과 원료소비, 에너지소비, 공업용수의

182) 환경부, 2002 환경백서, 2002. 11, 124면.

- 소비 및 소음과 기타 환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수적 통계
- (4) 해당 소재지에 대한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표명,
 - (5) 차기 환경보고서의 제시에 대한 일자,
 - (6) 허가된 환경감정사의 성명.

제 4 절 환경감정사에 의한 기업 외부적 환경감사와 인증절차

1. 개 설

기업 내부적 환경감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진 환경공표는 기업의 환경상황의 주관적 발표이다. 따라서 환경감사절차의 하나로서 환경감정사에 의한 환경공표의 외부적 법적 유효선언이 요구된다. 환경감정사는 해당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 환경경영감사와 환경공표가 유럽 환경감사법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심사한다.

이러한 외부의 환경감정사에 의한 환경감사와 환경공표의 외부적 법적 선언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을 가진 전문가를 허가관청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관청을 어디로 하며, 환경감정사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환경감정사의 허가

독일의 경우 환경감정사는 그에 요구되는 교육과 경험을 가져야 하며, 감사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환경감정사 협회로서는 사단법인,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등기된 협동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허가될 수 있다.¹⁸³⁾

183) 독일 환경감사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유럽환경감사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만이 환경감정사로서 허가되어 진다.¹⁸⁴⁾ 독일 환경감사법도 환경감정사의 임무수행상 요구되는 신뢰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제4조제1항).

독일 환경감사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환경감정사는 허가조건인 심사 시에 방법론,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기업경영, 기업경영상의 환경사무, 기업의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적 관계와 경영상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자기의 전문지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감정사의 허가심사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에 대한 증명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독일 환경감정법 제8조는 전문지식에 대한 자격증 취득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은 우선 특정한 전공부문의 대학졸업과 기능장 자격증과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통해서도 갖추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경영상의 환경보호에 대한 실무상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적어도 3년간의 그 부문의 직업활동이 요구된다(독일 환경감사법 제7조제1항제3호).

환경감정사의 허가신청 때 당사자는 그 업종분야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제지, 화학, 섬유, 금속세공 등). 왜냐 하면 각 분야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전문지식에 대한 시험은 전문적 지식의 소지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독일 환경감사법 제7조제2항제2d호).

우리 나라의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과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구의 활용이 허용되어 있으며(제24조제2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6조제2항). 여기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및 인정을 위한 일반요구사항(ISO 가이드 61)이다.

이에 반하여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은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장 소속 하에 심사단을 두고 있다(제7조

184) 유럽환경감사법 제6조제4항 참조.

제1항). 이 심사단은 환경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관리청장이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및 현장실무에 능통한 환경친화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제7조제2항).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환경경영시스템 및 환경감사관련법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자격요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일반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에 반하여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은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환경관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환경관리청장이 심사단을 위촉하는 것은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이 자발적으로 기업을 환경보호에로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감사기관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대학에서 환경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환경기사자격을 취득한 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환경감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환경감정사의 임무

기업이 내부적 환경감사를 실시하여 그것을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환경감사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위치에 있는 환경감정사에 의하여 환경감사를 받고 이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환경감정사는 당해기업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와 환경경영감사절차 및 환경공표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기준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환경감정사는 기업의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이 환경감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가 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기업의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이 환경관련법규정에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환경정책과의 일치여부,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그 밖의 환경관련법과의 조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최초의 환경감사에 대한 심사

환경감사제도의 하나의 요소로서 기업 내부적 환경감사는 환경감사제도에 최초로 참가하는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차후감사 때에는 환경경영감사에 통합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반복된다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만 가증할 뿐 불필요한 일을 중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환경감사는 소재지에서의 생산활동이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사실상의 영향을 검사하는 데에 기여한다. 환경감정사는 그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환경감사의 기술적 적합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불필요한 일의 중복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감정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적용한 개개 측정의 방법과 절차를 검사하여야 하며, 측정기록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감정사는 스스로 측정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측정기록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공인되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측정절차의 정확한 준수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추출시험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실상의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감정사는 작업행위와 담당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통찰하여야 한다.

(3)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

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법에의 일치와 기타 목표에의 일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상의 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시스템은 환경법과 기타목표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인식,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감정사는 환경경영시스템의 기능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환경감정사는 소위 환경편람에서 경영시스템의 기록을 통찰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감정사는 담당직원과의 면담과 임의 추출시험을 통하여 서류상의 기록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적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심사

환경감정사는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가 환경정책, 환경목표, 프로그램 및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감사시스템, 환경감정사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실시되어졌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5) 환경공표에 대한 심사

마지막으로 환경감정사는 환경공표의 정확성 여부와 그 공표가 해당 소재지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4.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관련법령은 이에 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심사단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규정만 있을 뿐 환경감정사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다.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은 환경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처인 환경부장관이 허가기관으로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감정사는 이러한

허가를 받아서 독립적·객관적 위치에서 환경감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감정사의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부문은 전문적이고 기술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법규명령으로써 하나 또는 다수의 민법상의 법인에게 환경감정사에 대한 허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탁규정에 근거하여 독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 회사가 설립되게 되었다. 동 회사가 환경감정사의 허가와 감독업무를 행한다. 공무위탁을 통하여 국가는 공무수탁자인 사인의 전문지식, 동기와 기술적, 경영적 설비를 이용하게 된다. 공무수탁자는 사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기능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경제상의 기업으로서의 독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는 독자적인 공권력의 담당자이다.

따라서 독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1조 제4항상의 관청에 속하며 자기의 권한내에서 행정행위를 발하거나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공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공권력의 위임은 법에 의해서 또는 법률상의 위임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공무수탁자는 자기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로부터의 통제를 받는다. 위탁자의 통제는 허가행위와 감독활동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허가와 자격증의 철회와 감정행위의 금지에도 미친다. 이와 같이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는 연방 환경부장관의 법적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전문통제는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환경감정사의 허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관리공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오염방지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법 제1조). 공단은 ①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진단 및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②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환경정책의 연

구·개발, ③환경시설의 수탁관리, ④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과학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⑦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에게 양도하는 사업, ⑧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설계 및 시공감리, ⑨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⑩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각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방지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환경감정사를 허가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환경관리공단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이 인력, 조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5. 환경감정사위원회

위와 같이 환경부장관이 환경감정사의 허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감독, 자격취득 및 허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행정관청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그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환경감사법의 도입 자체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와 기존의 규제일변도의 명령통제방식(command and control)의 환경관리를 지양하여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경제여건의 변화, 국제적 환경규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에의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산업계, 즉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독일의 환경감정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고려될 수 있다.

독일 환경감사법은 환경감사법 제4조에서 18조까지의 규정과 동 규정들에 근거하여 발해진 법규명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과 독일 환경감정 공증과 허가회사를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감독, 환경감정사의 허가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기관으로 환경감정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¹⁸⁵⁾ 동 위원회는 관할연방부처를 위해 자문하거나 지침의 제정을 제안하지 않고 스스로 지침을 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동지침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환경감정사위원회는 25명의 위원과 그의 대표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제, 자유업, 노동조합과 환경보호단체의 독일 연방상부연합회들과 관할연방과 주의 최고기관들로부터 추천되어 연방 환경부장관으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임명된다.

또한 동위원회는 환경감정사 허가기관의 시험위원회의 임명에 관한 시험위원의 목록관리, 배석원을 가지는 이의제기위원회의 임명에 대한 추천, 모든 허가사무와 감독사무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과 환경감사법에 의한 자격증명의 인정심사에의 참여의 임무를 지닌다.

독일의 환경감사법은 환경감사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인 자발성, 객관성,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원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감정사위원회도 고려할만한 제도이다.

6. 소재지등록절차

환경감사에의 참가공표와 그로 인한 우대조치는 해당명부예의 소재지의 사전등록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등록기관

환경감사에의 참가기업이 환경감사의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는 경우 이를 어디에 등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독일의 경우는 감사를 받은 소재지의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는 문서상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바이에른주는 뮌헨 상공회의소를 그 등록기관을 지정하였다. 등록기관을 그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관할 감독청의 감독을 받는다. 그 감독관청으로는 대개 주 경제부가 그에 해당된다. 감독조치는 물론 주 환경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185) 독일 환경감사법 제21조제1항제2문제1호 참조.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달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우대조치를 통하여 허가를 신고로, 감면 또는 면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경영촉진및환경경영감사에관한법률이 각 개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우대조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현행 개별법령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부가 등록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등록절차

환경감사에 참가하여 인증을 받는 기업은 유효성이 인정된 환경공표를 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할 것이다. 등록기관은 당해 기업의 소재지가 환경감사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재지를 소재지장부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기관은 해당 영업부문에 대해 환경감정사가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록될 소재지와 감사된 소재지가 상호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7. 참가공표

소재지등록은 기업에게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를 증명하는 참가공표 소위 환경감사 인증서 및 참가마크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고려된다.

제 5 절 환경감사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

1. 환경감사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독일의 경우에는 환경감사에 참가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우대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장래에 공적인 위탁사업의 실시 때 환경감사 인증서를 제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책임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과실과 위법에 무관한 위험책임을 포함하는 환경법적인 특별규정들이 많으므로 시설가동자가 환경영향의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다시 말하면 시설운영자는 환경영향이 자기의 시설가동을 통하여 유발되지 않았음을 진술할 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기업은 환경과 관련된 사건 전체의 포괄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어느 범위만큼 법규정들이 준수되었고 어떤 지침과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해명하여야 한다. 이로써 기업은 손해배상요구와 형법상의 결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시설운영자는 조직상의 의무와 경영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고 시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감사제도는 포괄적인 조직상의 의무로서 문서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책임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증명서를 지닌 기업은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환경증명서를 지닌 기업은 비교적 적은 보험납입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환경감사를 통하여 위험정황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책임에 대한 위험의 감소는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부문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을 높인다.

미국의 경우는 환경감사특권법을 통하여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다호주와 콜로라도주는 기업이 자기가 행한 위법행위를 임의적으로 공시하고 신속하게 교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시간주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위법행위가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캔자스주, 미시시피주 및 그 밖의 주들은 기업이 임의적 환경감사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벌칙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몇 개의 주는 임의적으로 환경법의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시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뉴저지주는 기업이 행정상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경미한 환경법의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위법행위가 환경 또는 공중의 보건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 밖의 주는 공시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민사 또는 행정벌칙으로부터의 포괄적인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5개년 환경감사 유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임의적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제기관에 대하여 확인된 환경법의 위반사항과 구제조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네소타주는 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져서 인간의 보건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지 않거나, 그 위법행위가 바로 앞의 해에 발생한 행위의 반복이 아닌 한 기업이 9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이 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선의로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벌칙의 경감을 받는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각 개별법령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2제3항).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도 제11조에서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대조치 외에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기술진단(제3호), 중소기업의 경우 방지시설설치자금 용자 신청 시 우선 순위 적용(제4호) 및 각종 표창 시 우선 순위 적용(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타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환경감사의 목적이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을 통하여

환경보호를 하도록 기업을 유도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환경보호를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 나라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대조치는 물론 독일에서 사실상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환경감사에 참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업비밀보장

환경감사시스템에 참가하는 기업은 이 시스템에 참가하는 다른 당사자, 특히 환경감정사, 등록기관, 환경기관 및 경쟁자들과 다양한 법적 관계에 있다. 이를 통하여 환경감사에 참가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등이 누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환경경영감사에 참가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자기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 법안의 편제 >

제1장 총 칙
제00조(목적)
제00조(정의)
제00조(적용범위)
제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제00조(환경정책의 확정)
제00조(환경감사의 실시)
제00조(환경목표의 설정)
제00조(환경프로그램의 설정)
제00조(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

제 3 장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제00조(환경경영감사의 대상)

제00조(환경경영감사의 범위)

제00조(환경경영감사의 절차)

제00조(환경공표)

제00조(유효선언)

제 4 장 환경감정사의 허가 등

제00조(환경감정사의 임무)

제00조(환경감정사의 자격요건)-독립성, 신뢰성 및 전문성 등

제00조(환경감정사의 허가절차)

제00조(환경감정사위원회)-위원회의 임무, 구성, 법적 통제

제 5 장 소재지의 등록

제00조(등록기관)

제00조(등록기관의 심사권한)

제00조(등록절차)

제00조(등록의 취소)

제 6 장 참가공표 등

제00조(참가공표의 방법)

제00조(환경보고서의 공개)

제00조(우대조치 등)-허가를 신고로 대체, 보고의무면제 등

제00조(비밀보장)

제 7 장 보 칙

제00조(비용)

제00조(벌칙)

부 칙

제00조(시행일)

제00조(경과규정)

제00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5장 결론 및 요약

종래에는 환경보호가 국가의 임무로 파악되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국가는 규제일변도의 명령통제방식에 의한 환경관리를 하여 왔는데, 이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경제여건의 변화, 국제적 환경규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종래의 질서법상의 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행정법상의 수단을 통하여 개인과 기업을 환경보호에로 유도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환경감사제도이다.

환경감사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과중한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경영의 합리화와 자원소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환경감사제도에의 자발적 참여로 인하여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감사제도는 기업경영과 환경보호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감사제도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게 되면 산업과 환경은 장래에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과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이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표준시리즈)과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명을 위하여 관련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중인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설비자금 등의 지원, 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등 각각 개별적인 차원에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감사제도와 유사한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친화기업의 인증 및 지정에 관하여 개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령은 국제표준규격에서 요구하는 환경경영체제와 환경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미비한 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행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별환경법 규정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의 내용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환경경영촉진및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에 담아 국제표준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의 구축과 환경경영감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길택·이제빈, 환경경영시스템과 경영자의 역할, 청문각, 2001.
- 구도완, 한국 환경 운동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96.
- 구자건, 환경감사의 원리와 활용 방안, 환경영향평가(제7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학회, 1998, 126면.
- 권희섭, 삶도 살리는 환경경영, 21세기북스, 1998.
- 김명용,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선방안, 연구보고(2001-7), 한국법제연구원, 2001, 81면 이하.
- 김은원·강신민, ISO900/14000 품질/환경경영 시스템 추진 실무, 대경, 2000.
- 김현태, 독일환경법상의 행정구제법,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31면 이하 참조.
- 박수혁, 환경감사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환경법연구(제16권), 1994, 41면.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 유지태,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호제도,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心泉桂禧悅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95, 880면.
- 유지태, 환경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228면 이하.
- 이병욱, 환경경영론, 비봉출판사, 1998.
- 이순용·김오우·이종호,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0)을 통한 시장기회창출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 생산성논집(제12권 제2호), 1998, 7면 이하.

참 고 문 헌

- 이종영, 환경경영감사제도의 내용, 법제연구(통권 제14호), 1998, 185면.
- 정영태, 환경경영시스템 이렇게 구축하자, KSA한국표준협회, 2000, 37면
- 정환도, 환경감사의 이해와 사례연구, 영남지역발전연구, 영남대지역발전연구소, 2001, 127면 이하.
- 한 철, 임의적 환경감사의 법리, 경영법률(한국경영법률학회), 1999, 575면.
- 한상욱,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동화기술, 1995.
- 허남훈, 국가발전과 환경, 동화기술, 1995.
- 허남훈, 환경과 기업경영, 신광문화사, 1995.
- 허완·정찬영 공역, 환경경영·감사 시스템의 벤치마킹,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 1994.
- 환경부, 2002 환경백서, 2002. 11, 109면.
- 한국표준협회 옮김, 알기 쉬운 환경 경영 체제, 1997.
-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環境リスクと環境法(米國編), 1995, 204頁.
- 1996 N.H. Laws 147-E:1.
- 1996 N.H. Laws 147-E:4.
- 1996 N.H. Laws S 147-E:9.
- 1996 S.C. Acts 384; N.J. Stat. Ann. S 13.
- 60 Fed. Reg. 66706 (Dec. 1995).
- 61 Fed. Reg. 41252, 41259 (Aug. 1996).
- 61 Fed. Reg. 54062 (Oct. 1996).

Abl. EG L 168/1.

ABl. Nr. 99 vom 11.4.1992, S. 1.

ABl. Nr. C 231, S. 13.

ABl. Nr. C 76, S. 18.

Ark. Code Ann. SS 8-1-305, 8-1-307(Michie 1995).

Balzereit/Kassebohm/Kettler: Umwelthaftung und Versicherungsschutz, BB 1996, S. 212.

Bartsch, T.: Erfahrungen mit Umwelt-Öko-Audits in den USA, ZUR 1995, S. 14.

Bell, Christopher L.: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nd ISO 14001, Environmental Watch, Western Europe, 1995. 12.1, S. 5.

Bräker, Stefan: Die erste Umweltprüfung, Beratende Ingenieure, 1996, S. 38 f.

Col. Rev. Stat. Ann. S 21-1-114.5 (West 1997).

Colo. Rev. Stat. Ann. SS 13-25-126.5, 25-1-114.5(4) (West 1997).

Das nordrhein-westfälische Wirtschaftsministerium, EG-Öko-Audits in nordrhein-westfälischen Unternehmen, 1995, S. 28.

Environmental Audi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http://euler.ntu.ac.uk/pr/>).

Environmental Auditing Policy Statement, 51 Fed. Reg. 25,004, 25,006 (1986)

참 고 문 헌

- Ewer, W.: Öko-Audit: Der Referentenentwurf für ein Umweltgutachter- und Standortregistrierungsgesetz und die Übergangslösung zur Anwendung der EG-Öko-Audit-Verordnung, NVwZ 1995, S. 458.
- Executive Order 12856, § 4-405.
- Falk, H./Frey, S.: Die Prüftätigkeit des Umweltgutachters im Rahmen des EC-Öko-Audit-Systems, UPR 1996, S. 59.
- Falk, H.: Die EG-Umwelt-Audit-Verordnung: die Zulassung von Umweltgutachtern in sechs Mitgliedstaaten, Manuskript, Sinsheim, 1996, S. 11.
- Falke, J.: Umwelt-Audit-Verordnung. Grundsätze und Kritikpunkte, ZUR 1995, S. 6.
- Feldhaus, Gerhard: Umwelt-Audit und Betriebsorganisation im Umweltrecht, in: J. Kormann (Hrsg.), Umwelthaftung und Umweltmanagement, 1994, S. 9, 19.
- Feldhaus, Gerhard: Umweltschutz durch Betriebsorganisation und Auditing, Dokumentation zur 17. wissenschaftlichen Fachtagung der Gesellschaft für Umweltrecht e.V., Berlin-Bielefeld, 1993, S. 46.
- Grund/Gebhard/Hubert Peter/Kaus/Sanfleber/Siebert: Umweltschutz- die Herausforderung meistern, Düsseldorf, 1995.
- Henn, K.-P.: Auf Herz und Nieren prüfen, Müllmagazin 1993, S. 11.
- Holdsworth, Lynn: Florida's Environmental Self-Audit Legislation: An incentive for Environmentally-Conscientious Business or An Opportunity for the

- Corporate Polluter to Suppress the Truth?, 27
Stetson L. Rev. 210, 214 (Summer 1997).
- Idaho Code S 9-809(1) (1996).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Environmental
Auditing - ICC Position paper on Environmental
Audits, Publication Nr. 468, Paris 1989.
- Kan. Stat. Ann. S 60-3339 (1995).
- Kan. Stat. Ann. SS 60-3334, 60-3335 (1995).
- Kloepfer, M.: Betrieblicher Umweltschutz als Rechtsproblem,
DB, 1993, S. 1129.
- Kothe, Peter: Das neue Umweltauditrecht, München 1997,
S. 13 f.
- Ky. Rev. Stat. Ann. S 224.01-040(10) (Banks-Baldwin 1997).
- Köck, Wolfgang: Das Pflichten- und Kontrollsystem des
Öko-Audit-Konzepts nach der Öko-Audit-Verordnung
und dem Umweltauditgesetz, VerwArch Bd. 87 (1996),
S. 653.
- Köck, Wolfgang: Indirekte Steuerung im Umweltrecht :
Abgabenerhebung, Umweltschutzbeauftragte und
"Öko-Auditing", DVBl, 1994, S. 33.
- Lauff, Rudolf: Das Umwelt-Audit in der betrieblichen
Praxis, Köln 1993, S. 14.
- Lübbe-Wolff, G.: Das Umweltauditgesetz, NuR 1996, S. 220.
- Lübbe-Wolff, G.: Die EG-Verordnung zum Umwelt-Audit,
DVBl. 1994, S. 373.

참 고 문 헌

- Lübbe-Wolff, G.: EG-Verordnung zum Umwelt-Audit, DVBl. 1994, S. 363.
- Lübbe-Wolff, G.: Öko-Audit und Deregulierung -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R 1996, S. 174 mit Fn. 15.
- Lütkes, Stefan: Das Umweltauditgesetz - UAG, NVwZ 1996, S. 234.
- Marten/Schmid, Die EU-Öko-Audit-Verordnung und der Britisch Standard (BS 7750) - Eine vergleichende Analyse, RIW 1995, S. 755.
- Maurer, 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0. Aufl., München 1995, § 23 Rdnr. 56.
- Mich. Comp. Laws Ann. S 324.14807 (West 1997).
- Mich. Comp. Laws Ann. S 324.14809(1) (West 1997).
- Mich. Comp. Laws Ann. SS 324.14801 to 324.14809 (West 1997).
- Minn. Stat. Ann. S 114C.26 (West 1997).
- Miss. Code Ann. S 17-17-29(7)(g) (1996).
- Miss. Code Ann. S 49-2-71(3)(b) (1996).
- Murray, Paula C.: The Environmental Self-Audit Privilege: Growing Movement in the States Nixed by EPA, 24 Real Est. L.J. 169(1995), p. 169.
- N.J. Stat. Ann. S 13:ID-125 (West 1997).
- OECD, Sustainable Development : OECD Policy Approaches for the 21th Century, Paris, 1997, p. 9.

- Oettl, Robert: Unsicherheiten mit EMAS und ISO, Beratende Ingenieure, 1996, S. 64 ff.
- Ohio Rev. Code Ann. S 3745.72(A) (Banks-Baldwin 1997).
- Ohio Rev. Code Ann. SS 3745.70 to 3745.73 (Banks-Baldwin 1997).
- Or. Rev. Stat. S 468.963(1995).
- Peglau/Clark, The European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Regulation (EMAS)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ISO 14001, UTA, 1995, S. 66 ff.
- S.D. Codified Laws S 1-40-34 (1996).
- S.D. Codified Laws SS 1-40-33 to 1-40-34 (Michie 1996).
- Scherer, J.: Umwelt-Audits : Instrument zur Durchsetzung des Umweltrechts im europäischen Binnenmarkt?, NVwZ 1993, S. 11 und 12.
- Schulz, W.: Aktuelles zum Umweltrecht, UBA 1994, S. 4.
- See Executive Order 12856 (Aug. 3, 1993).
- Sellner/Schnutenhaus, Umweltmanagement und Umweltbetriebsprüfung - ein wirksames, nicht ordnungsrechtliches System des betrieblichen Umweltschutzes, NVwZ 1993, S. 928.
- Tex. Rev. Civ. Stat. Ann. art. 4447cc(6)(d) (West 1997).
- UBA-Berichte 6/90, S. 83.
- Utah Code Ann. S 19-7-104 (1996).
- Utah Code Ann. S 19-7-109(1996).

참 고 문 헌

Utah Code Ann. S. 19-7-103(1996).

Va. Code Ann. S 10.1-1198 (Michie 1996).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Zulassung von Umweltgutachtern) vom 18.12.1995, BGBl. I S. 1841.

Waskow, Siegfried: Betriebliches Umweltmanagement - Anforderungen nach der Audit-Verordnung der EG, 1994, S, 69 ff.

Waskow, Siegfried: Betriebliches Umweltmanagement, 1997, S. 20.

Weinberg, P./Reilly, K. A.: Understanding Environmental Law, Matthew Bender, New York, 1998, p. 460.

Wyo. Stat. Ann. S 35-11-1105(c)(ii)(D) (Michie 1996).

Wöhe, Günter: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Betriebswirtschaftslehre, 16. Aufl., München, 1986, 83 ff.